

정·책·탐·당·자·가·만·드·는·경·제·전·문·지

나라경제

99.10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대책

제 7 차 APEC 정상회의

정책 새 협동조합 이렇게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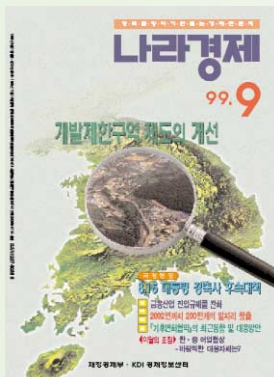
해설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

◀이달의 초점▶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

1999년 10월 1일 발행 · 제 10권 제 10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KDI)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암로 207-41 전화 (02)956-4114 · 주간 | ISSN 1227-8033 10

나라경제

1999년 10월호
통권 제107호



1999년 9월호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 4 권두칼럼 재벌 생존의 길/김영호 · 언론인
- 6 만남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장 상 · 이화여대 총장
- 11 제7차 APEC 정상회의/이기범 · 외교통상부

특 집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대책

- 14 재벌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정택환 · 재정경제부
- 19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이재현 · 재정경제부
- 24 농가부채 경감 및 연대보증 부담 완화/박현출 · 농림부
- 29 중소·벤처기업의 육성/문제도 · 산업자원부
- 34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
/남석현 · 노동부
- 37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김석동 · 금융감독위원회
- 41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이성권 · 건설교통부
- 45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의 비전/이영찬 · 보건복지부
- 50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남재우 · 환경부
- 54 인터넷 PC 보급 확산 통해 정보화 촉진
/강문석 · 정보통신부
- 58 어업인 소득증대 및 부담경감 대책/김영규 · 해양수산부

이 달의 초점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

- 62 소유 규제가 최선의 대안/박경서 · 고려대
- 65 소유 규제, 실리 없고 부작용만 크다/이인실 · 한국경제연구원

- 68 **기업정보** 부당한 공동행위(1)/이병주 · 공정거래위원회
- 75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전성철 · 경향신문 기자
- 79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김진선 강원도지사
- 86 **세계경제의 현장** 무역과 경쟁정책/조태열 ·駐제네바대표부
- 90 **경제수상** 개발제한구역과 杞憂/한현규 · 건설교통부
- 92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가경쟁력/박봉규 · 산업자원부

경제정책해설

- 96 **회계의 투명성 강화로 국가신인도 제고**
- 한국회계연구원 설립/박환균 · 금융감독위원회
- 100 **새 협동조합 이렇게 달라진다**/김경규 · 농림부
- 104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박종록 · 해양수산부
- 108 **물 수요관리 정책 방향**/홍성철 · 환경부
- 112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추진**/고광섭 · 정보통신부
- 117 **21세기 항공안전 강화 방안**/이우중 · 건설교통부
- 120 **예산성과금제도란?**/강태혁 · 기획예산처

- 124 **예산절약사례 1** 근무체제 개선으로 예산 절약/조진규 · 철도청
- 127 **경제 동향** 나라안 :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유광열 · 재정경제부
- 131 **경제 동향** 나라밖 : 엔화 국제화의 현황과 향후 전망/김우진 · KIEP



만남: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VS 장 상 이화여대 총장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재정경제부
KDI 경제정보센터

발행인/이진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편집인/한성택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단장

편집위원

- 재정경제부/김봉익 ·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 외교통상부/김영소 · 통상정보담당
- 과학기술부/이만기 · 정책총괄과장
- 농림부/이준원 · 법무담당관
- 산업자원부/진 흥 · 법무담당관
- 정보통신부/김재섭 · 기획예산담당관
- 보건복지부/이계용 · 기획예산담당관
- 환경부/남재우 · 정책총괄과장
- 노동부/남석현 · 기획예산담당관
- 건설교통부/이재영 · 기획담당관
- 해양수산부/박남춘 · 기획예산담당관
- 공정거래위원회/이병주 · 총괄정책과장
- 기획예산처/배국환 · 예산제도과장
- 금융감독위원회/박환균 · 기획과장
- KDI 경제정보센터/조병구 · 연구위원

편집간사/백우진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집장/김인철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이기덕 · 이상주

업무/안의일

인쇄/유성사

나라경제 · 1999년 10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0권 제10호
(통권 제107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11301-01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1301-6501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 FAX (02)3295-0748

홈페이지 주소 : <http://epic.kdi.re.kr>

인터넷 e-mail : nara@kdiux.kdi.re.kr

관리인: kcee, 하이텔: pcee

기사문의 : (02)958-4632, 463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27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재벌 생존의 길

김영호

언론인

정치적 변혁기마다 재벌개혁론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력 집중에서 파생되는 폐단을 없애고 부패구조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규제방안으로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 내부거래의 차단,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외부이사제의 도입,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이 거론되어 왔다.

역대 정권들이 이런 방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재벌이 너무 커져 손을 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다. 대형 재벌은 종업원수가 10~20만명이나 된다. 납품업체 및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실로 방대하다.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재벌인 셈이다. 또 국민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 5대 재벌의 GDP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도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할 만하다.

경제력이 일부 재벌에 집중되다 보니 한국경제는 소유집중, 독단경영, 시장독점, 계열확장, 금융편중과 같은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다. 소수의 총수와 그 혈족이 시장을 균점하여 자유경쟁을 제한한다. 산업연관이 없는 계열기업을 마구 확장하여 신참진입을 억제한다. 전문업종도 없이 부품산업인 중소기업의



영역을 무단하게 침해한다. 여기에다 금융자원까지 과점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재벌은 다계열·다업종을 골격으로 하는 거대한 기업군이다. 수직적·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해 칩에서 선박까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한다. 결국 모든 재벌이 모든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주요 영역은 과잉투자를

유발한다. 결국 재벌의 사업영역이 전산업에 걸치다 보니 국내의 시장에 국내업체끼리의 과당·출혈경쟁이 날로 격화된다. 일부 업종은 과잉·중복투자로 집단부실화하여 내부거래와 상호지급보증을 버팀목으로 겨우 연명하는 거대한 공룡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이와 유사한 유형의 기업집단이 없다. 해외언론은 이런 기업군을 적절하게 표현할 용어가 없다 보니 재벌을 그대로 로마문자화해서 'Chaebol' 이라고 쓸 정도이다.

재벌은 조직특성이 전제적이다. 혈연 중심의 경영체제로서 총수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중앙집권체제다. 씨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학연·지연에 근거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족벌체제이다. 총수가 지배하는 업무회의는 그야말로 어전회의나 다름없다. 제식훈련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토론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절대복명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의사결정을 주주총회가 아닌 기업주가 독단적으로 하니 이사회의 집행권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자원낭비가 초래된다.

그런데 세계경제는 어떻게 변하는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자동화와 세계시장의 無國境·無稅化에 따라 세계경제는 이미 2차 산업혁명에 진입했다. 생존전략이 절실한 선진국 기업에는 거대한 경영혁신의 돌풍이 분 지도 10년 가까이 됐다. 세계화·정보화의 추세는 기업의 구상과 집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것이 초국적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재벌은 어떠한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밖에 없다. 훈련된 인력을 대량해고 하고도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잡제품에서 첨단제품까지 생산하는 다계열·다업종의 재벌이 개방화·국제화의 격랑을 맞아 생존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도 외국기업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개방체제에서 계열기업을 수십개 씩이나 거느리고 전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경쟁력 없는 계열기업을 그룹경영에서 독립시키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계열사의 제품을 우대구매하는 따위로 부실기업을 지원해서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계열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공룡이 환경변화에 거대한 몸집을 적응시키지 못해 멸종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내의 부패구조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만큼 심각하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품조달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위장 계열사에 가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조달하거나, 협력업체한테서 뒷돈을 먹고 부품을 공급받아서 절대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부품공급시장을 전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좋은 부품으로 만든 제품만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에 이긴다. 그래서 내부거래의 근절이 중요한 것이다.

한국재벌에 있어서 최대의 경영혁신은 기업내의

관료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상사의 눈치만 보는 수직적 조직의 눈을 고객에게 돌리도록 경영조직에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기능간·부서간의 영역을 제거하여 경영조직을 수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영혁신이다. 이와 함께 위계질서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계층을 축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지연·학연·혈연에 근거한 파벌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경쟁자를 조직적으로 음해하여 제거하는 파벌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사원이 성장하지 못한다.

자발성·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의사결정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상사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기안된 결재서류가 협조부서를 거쳐 회장까지 올라가자면 결재난이 10여 곳이나 된다.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은 신속성·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만든다. 수직적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여 단위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재벌그룹에는 2세 사장이나 경리출신 사장이 많다. 이제는 경영환경이 변하여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비자금 따위를 위한 회계분식이 어려워진 만큼 사장의 역할도 달라졌다. 무국경 시장에서는 생산과 판매를 이는 경영인만이 성공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세계시장을 누비면서 시장특성을 터득한 경영인만이 판매신장을 통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 생산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경영인만이 어떤 생산과정에서, 어떤 부품에서 원가절감이 가능한지 안다. 재벌 2세가 만능경영인처럼 처신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주주의 지위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총수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방식의 재벌 체제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경영은 없고 통치만 있을 뿐이다. 계열기업별로, 사업장별로 분권화를 서둘러야 한다. 경직된 조직경영은 조직원의 창의성을 묵살하기 쉽다. 총체적 에너지를 동원하는 데 실패하면 경쟁우위를 상실한다. 이것은 사멸한 무수한 재벌들이 응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계열분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재벌해체가 아닌 재벌생존의 길이다. ■

차 흥 봉

보건복지부장관

대담 : 장 상/이화여대 총장

• 때 : 99년 9월 6일 • 곳 : 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



—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 ‘생산적 복지’란 자기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빈곤 계층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자칫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생산적 복지’ 개념을 크게 반영했습니다. 최근 클린턴 행정부도 복지-근로 연계 정책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를 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민이 일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유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산정시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근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번 시책에 재원이 많이 투



‘생산적 복지’란 자기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복지정책은 자칫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재산 등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밀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므로 크게 예산이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으로 볼 때 빈곤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사회구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절대빈곤자가 인구의 3~4%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가난한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은 큰 정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또한 야당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면 혹 정치적으로 보이더라도 불가피하겠지요.

이제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사회복지서비스센터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국민과 쉽게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기초업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 읍·면·동사무소를 주민관리업무에서 복지관련 업무로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보험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의 통합도 이런 맥락에서 잘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하여금 생활보호대상자·노인·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토록 하여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의 보건소를 선정하여 보건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범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시행에는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국민 중에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요?

▲ 사회보험은 가입에 있어 강제성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료체계

는 부담능력에 따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부담토록 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의료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가?”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에게 ‘인간의 1차적 본성’을 뛰어넘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간의 2차적 본성 즉, 사회적 본성에 대해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보험의 통합도 이러한 맥락에서 잘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소득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과거 보건사회부 사회과장으로 재직시 노인복지업무에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통적인 효에 의한 가정복지가 우선되는 ‘先가정복지, 後사회복지’가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가족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효의 윤리를 실천하다 보면 규범적 가치와 현실적 행동과는 괴리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범적 가치를 현실화시켜서 가정·사회·국가가 함께 노인을 보호하는 ‘삼위일체식 노인복지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시골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시골병원에 노인분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우 보건과 복지가 따로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대상이 아닌 노인을 위해서는 경로연금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孝'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 개념과 복지 개념을 접목해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많은 공기보다 사랑과 정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도시지역 병원 부근에 설치한다면 의료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 노인복지시설을 먼 오지에 설치하여 실패한 선진국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노인들이 시골의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료양로원 등 실버타운을 도시지역에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집 같은 환경으로 꾸며진 그룹 홈(group home)식의 양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그룹 홈 형태로 공동체적인 시설을 운영하면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복지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취약 여성의 복지증진과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보호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간접 지원하는 사업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부에서 노인·아동·여성의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특별위원회'도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보육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교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강화하



대담자 장 상 이화여대 총장

고 있습니다. 두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가 현재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인간의 성장에는 사랑과 보호와 같은 정서적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유아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육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의 보육사업도 중요합니다.

맞벌이부부나 여성들의 생산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중에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사업과 조기교육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보완적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제7차 APEC 정상회의

—결과 및 의의



이기범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서기관

지난 9월 12일~13일 양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제7차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와 호주 등의 주도하에 89년 11월 출범한 APEC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1~4차는 각료회의로만 운영, 93년 이후부터는 정상회의 개최), 각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오면서,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의 적용범위를 역내국가는 물론 역외국가에까지 확대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 오고 있다.

APEC은 89년 출범 당시 회원국들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로 시작하였으나 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됨으로써 '아·태 공동체' 구축이라는 장기 비전,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연도 설정, 그리고 협력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역내 협력체로 발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가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갖게 하였다. 사실 APEC의 21개 회원국이 98년도 기준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57%, 세계 총교역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APEC 지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보겠다.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와 경제·기술 협력(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사업을 양대 중점분야로 설정하였고, 97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는 금융분야 협력을 세번째 중점 분야로 논의해 오고 있다. OECD, WTO 등 세계경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7차 APEC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당사국들이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역내 금융위기가 준 교훈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금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될 예정인 WTO 뉴라운드 의제 및 협상방향에 대한 APEC 차원의 메시지를 채택하였으며, APEC 창립후 10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첫 번째 주제인 '경제위기의 교훈 및 향후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발제자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원래 APEC 정상회의의 운영방식은 이른바 'Retreat' 방식으로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보통 주제별로 1~2명 정도의 발제자를 지정하게 된다. 금년도 정상회의 의장인 뉴질랜드의 쉬플리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첫 주제의 발제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김 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이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이라는 점을 APEC 정상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발제연설을 통해 우선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개혁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예를 들면 과거 재벌의 지배구조와 같은 폐단을 개혁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 대통령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APEC 회원국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위기극복 경험을 회원국 모두와 함께 나누고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완화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0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APEC의 새로운 번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정책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연설은 회원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연설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번 정상선언문에 반영됨으로써 우리나라의 APEC 내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였다.

제2주제인 'APEC 10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토의에 있어서도 김 대통령은 APEC이 10년간의 업적을 토대로 지속적인 자유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천년을 향한 APEC의 비전으로 전자교육, 과학기술 및 평생교육 등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제3주제인 'APEC 이슈에 대한 이해와 지지 향상' 토의시 김 대통령은 APEC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뉴질랜드가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제도개혁과 투자

자의 신뢰회복, 시장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홍보에 나선 것이 위기극복을 위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9월 11일 개최된 APEC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중인 각국 정상들 중 첫 연사로서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에서 김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에 입각한 각종 개혁성과를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였고, 역대 지식기반 경제 구축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인 간의 협력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APEC에 대한 민간인들의 참여확대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및 중국·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동 티모르 문제에 대한 정상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다지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번 정상회의를 다자차원뿐만 아니라 양자차원의 정상외교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발발후 지난 1년 반 사이에 크게 달라진 우리 경제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아·태 지역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향후 이들 국가들과 역대 및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의 유일한 경제 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교역의 66%, 총 해외투자의 56%를 차지하는 지역단위로서는 최대의 경제파트너이며, 또한 동남아 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화경제권과 같은 소지역 경제권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이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정호**

재벌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

정 부의 재벌개혁은 재벌 내외부에 경쟁과 견제라는 시장원칙을 작동시켜 차입에 의한 문어발식의 방만한 사업확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총수 1인 지배체제를 바꿔 나가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택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정부의 재벌개혁은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소액주주와 사외이사, 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며, 상호지급 보증을 금지함으로써 확장 위주의 선단식 경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핵심역량 강화·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개개 기업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편하려는 것이 정부 재벌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98년 1월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 총

수간에 합의된 재벌개혁 5대 원칙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재벌개혁 5대 원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여건이 변화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재벌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5일 '재계-정계-금융기관 간담회'에서는 5대 재벌의 금년 상반기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연말까지 대기업을 구조조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들이 논의되어 총 7개항의 실천과제가 합의되었다. 소위 '재벌개혁 3대 보완대책'은 7개항의 합의 가운데 98년 1월 재계와 정부 간에 합의된 5대 원칙을 내실화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 상속 및 증여의 방지 등 실천과제를 말한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성안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보완

재벌기업은 총수뿐 아니라 수

많은 전문경영인과 임직원, 소액주주 및 협력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이 경영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IMF 이전이나 지금이나 총수 개인의 지분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열사 출자를 포함한 내부지분을 통해 재벌총수는 사실상 100%에 가까운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다.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기획조정실 등 기구를 활용하여 모든 경영결정을 독점하여 왔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의 극단적 불균형 현상은 건전한 기업경영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이익신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작년초부터 집중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허용,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사외이사제·사실상 이사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총수 1인

소액주주와 사외이사, 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며, 상호지급
보증을 금지함으로써 확장 위주의 선단식 경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것이다.

지배방식에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재벌 기업을 상대로 경영의 부실을 추궁하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일례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영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지배주주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보완과 관행의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투명화 하는 것은 재벌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데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첫째,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명확한 역할을 설정할 것이다.

지난해 2월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계열주의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영 현장에서 제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주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하였더라도 이들 사외이사의 역할이 불분명하

여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열주 또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장회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를 총이사의 50%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 활동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지배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이 98년 9월부터 허용되었으나 실제 기관투자자들이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규정에 권리행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권리행사지침에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 손해발생시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셋째, 주주총회·이사회·감사제도의 운영의 실질화를 기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기업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내부 견제장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 학계·재계·금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토대로 주주총회·이사회·감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서면투표제도

허용, 화상회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 허용, 이사회 처리과정의 이사회 의사록 기록 의무화 등은 「상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하기 위해 상법 개정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2금융권의 경영투명성 강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진 시장의 변화로는 증권·투신·보험 등 제2금융권의 급속한 성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재벌소유 제2금융권 계열사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96년초 5대 재벌의 투신사 수탁고는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3월에는 무려 32%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7월 말 현재 5대재벌의 수탁고 총액은 무려 82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투신·보험사들은 모두가 비상장기업으로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금흐름에 대한 차단벽(fire-wall)도 불완전하여 계열사에 편중된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제2금융권의 급속한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무엇보다 경영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전체 이사회회의 2분

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회제도를 도입하여 경영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법령 및 규

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독관' (compliance officer)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기업보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예: 대표소송제기권 0.01% → 0.005%)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wall)을 강화할 것이다.

제2금융권 자금이 재벌의 사금 고화되지 않도록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신사 및 보험사의 동일인 및 자기투자한도 규제대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관련 회사도 포함토록 보완하고, 현재 신탁재산의 10%(투신), 총 자산의 3%(보험)로 되어 있는 투신사 및 보험사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를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서

지난 8월 25일 재계·정계·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재벌개혁 3대 보완대책'은 7개항의 합의 가운데 재벌개혁 5대 원칙을 내실화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 및 증여의 방지 등 실천과제를 말한다.

적용하고 있는 거액신용 공여한도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자산 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 계열펀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팀을 금감원에 설치하고,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상호교차, 우회투자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우선 금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계기로 계열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비상장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001.1.1일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제도를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

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 설립시 대주주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할 계획이다.

재벌기업의 내실 있는 재무구조개선을 유도

재벌기업의 내실 있는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할 것이다.

순환출자의 억제

99년 4월 1일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지난해 보다 12조2천억원이 증가된 29조9천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증가액의 89%는 유상증자 참여 등 계열사에 대한 출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98년 44.5%에서 50.5%로 상승하였고, 특히 계열사의 지분율은 35.7%에서 44.1%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증가로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외부자금의 유입 없

이 장부상으로 부채비율이 축소되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분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상의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규모에서 제외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여신운영의 건전성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순환출자를 감소시키도록 유도하는 등 간접규제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4월부터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순환출자를 직접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출자총액한도와 초과분 해소시한 및 예외인정범위 등 보완대책을 병행하여 신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당내부거래 차단

그간 계열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와 선단식경영의 핵심수단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이 분산되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

화가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9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1~10대 그룹 계열회사의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제도화하고 소액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심사지침에 구체화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예방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부당내부거래의 관행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조사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칙 상속 및 증여를 방지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을 시정할 수 있는 상속세의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하여 상속세 납세 인원이 연간 2,800명(과세자 비율 1%)에 불과하고 전체 세수도 국세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95년 기준으로 과세자 비율은 일본(5.5%)이나 미국

(3.6%)에 비해 크게 낮고 세수 비중도 일본의 4.7%, 미국(94)의 1.8%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세 정의와 재벌의 경영권 대물림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현행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45%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고액재산가의 인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시효를 현행 15년에서 미국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생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변칙적인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공익법인의 동일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출연자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하여 변칙적 계열회사지배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첫째, 세제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를 추진하고 둘째,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고 셋째,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넷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을 마련하여 99년 8월 16일 조세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세제발전심의



이재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 개혁(안)’ 마련

이번 세제개편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所得分配構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득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입법을 추진

하겠으며,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호화·사치주택의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액 재산가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을 실현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임시국회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였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세제개혁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무 공무원법」 등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응하여 「주세법」, 「관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1년부터 실시

현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함께 적용되고 있는 금융소득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 1월부터 종합과세

체제로 되돌아간다. 다만, 현행 이자소득세율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2%는 내년부터 20%로 낮아진다. 시행내용은 96년, 97년과 같이 1년간 이자와 배당 등 부부합계 금융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며, 2001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이 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이 경우 1년간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15%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부부가 1년간 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인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현재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며 금융소득이 아주 많은 일부 고소득층만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

첫째,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양도세의 과세대상을 소유주식의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시

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거래하는 모든 주식으로 확대하고 그 세율은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가 주식양도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할 경우에 적용되는 주식의 할증율이 인상된다.

둘째, 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을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변칙적 기업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액면가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1회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10년 동안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은 30% 이하로 제한하며 기업관련 공익법인의 출원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선임 등이 이사 총수의 5

〈표 1〉 특별과세 개편(안)

현 행		개 선
일반과세 (118만명)		일반과세 (172만명)
간이과세 (54만명)		폐 지
과세특례 (10만명)	매출액 4,800만원/연간	간이과세 (10만명)
소액부징수(103만명)	매출액 2,400만원/연간	소액부징수(103만명)

분의 1(총 이사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인정)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자산운용 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인회계사 등 세무확인대상도 자산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서 3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셋째,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현실화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재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도 50%로 인상된다.

호화·사치 주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

최근 분양경쟁률이 최고 22대에 이르고 프리미엄이 1~2억

원을 호가하는 등 호화·사치주택의 분양열기가 고조되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이 비현실적이어서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적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기준을 강화하여 고액재산 소유자에게 적절한 세부담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고급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기준시가(시가의 60~70%에 불과)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한다. 다만, 고급주택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실거래가액 6억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전용면적 50~73

평(분양면적 65평~95평 정도)의 중형고급주택의 취득세율도 2%에서 4%로 인상함으로써 주택의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되도록 차등하여 과세된다.

고소득사업자 과세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선

고소득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여 왔다.

앞으로도 모든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복권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간이·과세특례)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반과세자와 특례과세자 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실수입금액을 숨겨 과세유형 전환을 기피하면서 특례과세제도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특례납세자수는 전체 사업자의 60%이나 세수는 2%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특례과세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과세유형별로 세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함으로써 특례과세제도가

〈표 2〉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현행	개선안
· 급여액 500만원까지 : 전액 · 500만원 초과 급여액 : 30%	· 급여액 500만원까지 : 전액 · 500만원 ~ 1,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급여액 : 10%
* 연간 900만원 한도	* 연간 1,200만원 한도

〈표 3〉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식음료품	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생활용품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
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대중스포츠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세부담 회피수단이 아닌 납세편의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과세유형이 2000년 7월 1일부터 3단계로 축소된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1억5천만원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된다.

이와 아울러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공제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소득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재실시하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호화·사치 주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는 한편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세부담이 경감된다.

를 수취하여 신고할 때에는 세금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현행 : 20%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 원재료 구입액에 대해 적용하던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상향(3/103 → 5/105) 조정하겠으며,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매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도 인상(1% → 2%)하고, 공제한도액이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성실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을 증가시키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임금삭

감·구조조정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모든 봉급생활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연간 900만 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중산층 이하 소득자에게 보다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제율을 조정하였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세부담을 평균 28% 인하

또한 봉급생활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특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크게 인상하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유치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혜택이 자녀 1인당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교육과정이 유사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일반 시설학원의 학원비도

〈표 4〉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특소세 부담률

(단위 : %)

연도 \ 소득분위	1	2	3	4	5	6	7	8	9	10
1997	0.47	0.36	0.23	0.30	0.27	0.24	0.26	0.49	0.33	0.55
1998	0.82	0.50	0.43	0.36	0.33	0.30	0.27	0.32	0.25	0.42

註 : 소득분위란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자녀 1인당 연 230만원까지에서 3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지출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의료비공제를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로 확대하였다.

세대주인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취득을 위한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저축금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연간 72만원까지 공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18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각종 공제 인상효과를 모두 합하면 연간 세부담 경감액은 약 1조 4,000억원으로서 금년도 근로소득세 징수 전망액의 28%에 해당된다. 봉급생활자들이 조기에 이러한 세부담 경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중에 종전 세법에

의하여 초과 징수된 금액을 9월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게 된다.

한편,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도 현재 연급여 2,000만원 이하자에서 연급여 3,0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하였다.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폐지

지난 77년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된 특별소비세는 그간의 소득수준 상승 및 소비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도입 당시의 기본골격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식음료품·가전제품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오히려 심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 이들의 特消稅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중산·서민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000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식음료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자 가격은 대개 10~2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석유류 등과 골프장, 유흥장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계속 부과된다. ■

농가부채 경감 및 연대보증 부담 완화

지 난해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이후 농촌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어 국민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 탄력성이 큰 쇠고기·우유·채소류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농업조수입이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환율상승으로 비료·농약·농구비·사료 등 영농자재값이 인상되어 농업경영비가 늘어나 농업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진 농가는 원금상환 및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농가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농촌지역에 연대보



박현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증으로 인한 연쇄도산 사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연대보증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였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새정부 출범후 농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부채조사협의회'를 98년 4월 18일자로 구성하여 농가부채 규모와 조사 방안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부채조사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99년 5월 18일~19일 부채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부채규모 조사보다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농민단체의 건의를 받아 '부채조사협의회'를 '부채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98년 7월 25일, 8월 12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부채대책을 협의하였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농민단체협의회 등을 비롯한 14개 농민단체에서 '부채협의회'를 '농가부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도 농민단체장으로 하자는 건의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민단체장(8명), 각 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4명), 학계(4명), 농림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98년 8월 17일자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0월 13일까지 여덟 차례의 회의를 거쳐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IMF 이후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농·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농가부채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98년~99년 기간중 1조4천억원의 부담경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98년 상반기중에 농가부담 줄이고 영농자금 지원을 확대

98년 1월~6월 시기에 상환 예정인 축산자금 5,707억원과 시설원예자금 45억원을 3~9개월간 상환유예 조치하여 어려운 축산농가 및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였다.

98년 4월 15일자로 농특회계 융자금 6조8,142억원과 농·축산경영자금 4조4,700억원에 대하여 3.5%P의 금리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예산에서 별도로 1,79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1.5%P 소폭 인상하였고 농림부 소관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에서 지원되는 6조1,619억원의 자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IMF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여 총 2,710억원의 부담경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농가부담경감 조치에 못지 않게 저리의 영농자금지원을 확대

정부는 IMF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농가부채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98~99년 기간중 1조4천억원의 부담경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 원활한 영농을 도모하고자, 농·축산 경영자금 6,5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4조4,700억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487억원의 농가부담을 완화시켰다.

고율의 농·축협 상호금융자금을 대해서는 98년 하반기에 상환 기일이 도래되는 상호금융자금 6조618억원에 대하여 98년 6월 15일자로 이자만 납부하면 원금 상환 기일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조치하였고,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 3조5,201억원에 대해서도 98년말까지 기간을 정하여 정상이자만 납부하면 연기 또는 대환조치하고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와의 차액은 상환일에 납부토록 하였다.

98년 하반기에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추진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을 98년 11월 수립하여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농업생산목적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일을 2년

간 연기하였다. 상환연기 대상 자금은 각종 농업시설자금과 경영체 육성자금 등으로 하고, 단기 자금인 농업경영자금과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 생활환경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제외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농가에 일률적인 혜택을 주는 과거의 부채 대책과는 달리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예컨대, 농업용 이외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농촌지역은 자금대출에 있어 보증인 등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채대책 자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는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이신용조사에 의한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5%로 내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 801억원을 98년 정기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부채대책 추진에 따라 상환연기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규모를 총 1조4천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98. 11.

30~12. 23)을 받은 결과 9만 5,690호의 농가가 9,021억원 (당초계획 1조4천억원)을 신청하여 지원대상농가 31만5,949호의 30.9%, 지원 금액의 64.4%로 나타났다.

농가의 신청이 낮은 이유로는 연체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금은 신청을 기피하였고, 2년후 일시상환이라는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에도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부담경감조치 추진

99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자금 7조1,097억원의 금리를 당초 6.5%에서 1%P를 인하하여 5.5%로 운영함으로써 801억원의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상호금융자금(농협 19조6,739억원, 축협 9,930억원, 임협 1,180억원, 삼협 223억원)에 대하여도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금리도 2%P 인하하여 4,164억원의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켰다.

농가경영회생 및 고액 시설물의 유희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천억원의 자금으로 정책자금 대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영체에 대해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에 대하여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인수 희망자에게는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 계획을 9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99년 3월 28일에는 농업생산 목적의 상호금융 부채차입으로 고리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을 마련하여 연리 6.5%,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8만7천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금리부담을 완화토록 하였다.

농·축·임·삼협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를 2000년말까지 연장하였다.

99년 5월 1일에 정책자금 9만3천억원의 금리를 0.5%P 추가 인하하여 IMF 이전 수준인 5%로 환원한 데 이어, 99년 7월 1일부터 농·축산 경영자금 4조4,700억원의 금리도 IMF이전 수준인 5%로 환원시켰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자 무입보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제도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고금리의 상호금융을 농업목적으로 차입한 농가에 대한 이자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을 상반기에 7천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중산층·서민가계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8월 2회 추경에서 추가확보된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을 농업생산목적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 연리

6.5%(이자는 1년 후취), 2년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부담 완화 대책

외환위기 이후 채무자의 도산이 연대보증을 선 이웃농가의 도산으로 이어져 마을 전체가 연쇄도산된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농업인의 연대보증 문제가 농촌지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피해를 차단하고 농촌민심을 안정시킬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대보증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99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농어민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99년 8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연대보증 부담완화 및 연체채무 해소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연대보증의 폐해, 상호금융대출에서 문제 돼

농업인에 대한 대출액 약 28조 원 중 연대보증 대출액은 43.7%인 12조2천억원이며,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상호금융 대출시 크게 활용되고 있어 연대보증의 폐해는 상호금융 대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농업용 대출액 18조원 중 연대보증 대출액은 6조8,400억원, 연체상태에 있는 대출액은

3,600억원(5.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대보증 대출액 중 연체액은 6,325억원으로 연체액만을 고려할 때 연쇄도산이 크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99년 3월 8개 부락 305호 농가를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연대보증 채무농가 142호(전체농가의 46.6%, 평균보증액은 2,200만원) 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가 20%인 27호였고, 평균 피해금액은 1,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증채무가 있는 농가의 평균 보증건수는 3.37건이었다.

정상상환중인 농업용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

정상상환중인 농업용자금 6조 4,800억원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이를 무입보로 보증하여 해소시키기로 하였다. 2000년 1~6월 기간중 채무자가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의 간이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서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그리고 기존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무보증 한도 1억

외환위기 이후 채무자의 도산이 연대보증을 선 이웃농가의 도산으로 이어져 마을 전체가 연쇄도산된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농업인의 연대보증 문제가 농촌지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부담완화 및 연체채무 해소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금에서 보증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연체채무자가 스스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대출시 연대보증 해소

원과는 별도로 연대보증인 없이 보증되며,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용자금의 연대보증 해소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용자금 3,600억원에 대하여는 99년 9월부터 지원되는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 중 일부를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는 회생가능한 농가의 연체해소 자금으로 지원하여 우선 연체상태 해소후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99년 7월 1일부터 보증인 없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무보증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뿐만 아니라 사료의외상대금 등 상거래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하여 필요한 자금을 농업인들이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대하여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신

〈표〉 연대보증 및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99년 4월말 기준)

		대출잔액	연 대 보 증			기 타 (신용·담보)
			소 계	순수입보	농신보입보	
농 업 용	상호금융	66,680	27,695	22,040	5,655	38,985
	정책자금	112,847	40,673	27,249	13,424	72,174
	소 계	179,527 (100%)	68,368 (38.1)	49,289	19,079	111,158 (61.9)
비농업용		100,009	53,806	50,583	3,223	46,203
총 계		279,536 (100%)	122,174 (43.7)	99,872	22,302	157,362 (58.3)

규모증 수요증가(2000년 2조7천억원)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업 자신통보증기금 운영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6조4,800억원에

달하는 농업용 자금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해소해 줌으로써 성실하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60만 농가들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보증피해로 억울하게 도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농업

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연쇄도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농촌 민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국민의 정부」 10대 농가부채 대책〉

(단위: 억원)

대 책 내 용	부담경감 효과
① IMF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연기(98. 1~98. 6) • 축산농가(5,707억원) • 시설원예농가(45억원)	238 (236) (2)
② 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 하향조정(98. 4. 15) • 농특회계 6조8,142억원, 농축산경영자금 4조4,700억원(8.5 → 6.5%) • 기금 금리동결(6조1,619억원)	2,710 (1,790) (920)
③ 농·축산경영자금 확대(98. 4. 6) • 규모 : (97년) 3조8,200억원 → (98년) 4조4,700억원	487
④ 농가 상호금융대출금 기한연기 및 연체이자 징수유예(98. 6. 15) • 기한내 연기대상 : 6조618억원 • 연체이자 상환유예대상 : 3조5,201억원	2,002 (993) (1,009)
⑤ 98 농가부채대책(98. 11) •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9천억원) •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1천억원) • 정책자금 금리인하(6.5 → 5.5%) - 농특 6조4,000억원, 재해복구 900억원, 농기계 6,197억원 등 • 상호금융 대출금리 2%P 인하 - 농협 19조6,739억원, 축협 9,930억원, 임협 1,180억원, 삼협 223억원 • 특별경영자금 지원(7천억원)	5,912 (608) (50) (801) (4,164) (289)
⑥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연장(1998년말→2000년말)	2,231
⑦ 정책자금 9조3,170억원 금리 추가인하(5.5 → 5%)(99. 5. 1)	311
⑧ 경영자금 4조4,700억원 금리 인하(6.5 → 5%)(99. 7. 1)	258
⑨ 농신보 무입보 보증한도 상향조정 5천만원 → 1억원(99. 7)	
⑩ 농신보증범위 확대(99. 7) : 신용사업채권 → 경제사업 채권	
계	14,149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대비

21

세기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불어닥친 정보화의 물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21세기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모습도 급격히 달라져야 한다. 종래의 노동과 자본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은 지식과 기술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하며, 공급자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보다는 개별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된 고품질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기업간 경쟁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모든 기업활동도 국경을 넘어 인프라 및 인적자본 등이 가장 잘 완비된 최적 지역을 찾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단절적이



문재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반 과장

고도 불확실한 시대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기민성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때 창의성이 있고 유연한 구조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야말로 이러한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업의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산업의 역동성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별 대기업들이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함과 아울러,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외환위기의 극복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 임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세계 일류의 경제발전과 건전한 경제체제를 이룩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전자·정보 등 기술집약업종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 활발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압축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은 꾸준히 증대하여 왔다. 5인 이상의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80년

96.6%에서 97년에는 99.1%로 늘어났으며, 고용수준은 동기간 동안 49.6%에서 69.3%로 증가하였고, 생산액도 31.9%에서 46.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지난 외환위기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많은 부도기업이 양산되는 등 급격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가 극복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엔 월 평균 1,600여개에 불과하던 창업법인 수(7대 도시 기준)가 금년 들어 2,30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년 6월 이후에는 부도기업 수의 10배 이상인 매월 2,700여개의 중소기업이 새로 창업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평균 300%를 상회하는 높은 부채비율에서 보듯이 차입금 위주의 자본조달로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투자도 경쟁국에 비해 극히 저조하여 핵심기술을 대부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중소기업은 자생적 경쟁력의 확보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만 안주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 면에서도 중소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02년까지 1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창업되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전 과정에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배양하여 경쟁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조업의 대기업과의 수급관계 비율이 약 60%에 달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 특정업종은 어음결제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어음결제 기간도 120일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어음거래 관행으로 인해 자금 측면에서 대기업에 종속적인 관계로 묶여 있어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수요처가 소수의 완제품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수출할수록 수입을 더욱 유발하는 구조를 초래하여 무역흑자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금년 들어 월 평균 240여개가 새로이 등록되고 있어 금년 7월말 현재 작년말보다 82%나 증가한 3,723개에 달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97년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들에 대해 기술·인력·자금 등 각종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리나 아직 전반적인 기술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민간 벤처캐피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기업형태도 미국식의 고수익·고위험형의 벤처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전자·정보, 기계·금속 등 기술집약업종을 중심으로 벤처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사실이다. 또한 그간의 벤처기업의 성과를 평가해 볼 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R&D 투자비율이 33배, 매출액 증가율이 3배, 영업이익률이 4배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고성장·고수익을 시현하고 있어 이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는 벤처 열기의 불이 지펴지는 데 성공한 단계로 평가되는 바, 벤처기업가의 꿈이 실현되는 코스닥시장에서 성공신화가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엔젤을 비롯한 민간투자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급증추세에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모아텍'은 작년말 주식이격이 2만원이 채 안되었으나, 8월말 현재 44만원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며, 서울대생들이 창업한 '아이패스'는 액면가의 76배의

가격으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성숙하기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취약하고, 기술인-자본가-경영자간의 인적 네트워크 체계가 미흡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주변에 스탠포드와 같은 우수한 대학-벤처자본가-전문경영인의 네트워크 밸리라고 할 수 있으며, 화교도 혈연중심이긴 하나 네트워크체계가 발달하여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벤처기업을 구성하는 3자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금지원도 아직은 투자보다는 융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안정적인 경영과 성장기반의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지원체계도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

정부는 이번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였다.

첫째, 최근 무르익은 창업열기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내년부

터 2002년까지 10만개(7대 도시, 법인 기준) 이상의 중소기업이 창업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기술혁신센터 등 창업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창업절차 간소화 및 인력 확충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전과정에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벤처기업인의 계속적인 성공신화가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이룩하는 촉매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기업 의존체제, 보호와 지원의 객체라는 의식에서 탈피하여 자생력을 배양하여 경쟁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기술·판로 등 주요 분야에서 정책의 전환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술 집약적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은 주요 수요처인 완제품 생산 대기업과 수평적·대등적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창업인프라의 대폭 확충

첫째, 창의력과 추진력을 가진 젊은 기업가 군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단기강좌 위주의 교육과정을 2~3개월 정도의 중기과정으로 신설·전환

하고 소요경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창업강좌가 내실을 갖추도록 하며, 창업강좌 수도 대폭 확대하여 현재의 고조된 창업열기가 계속해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할 '창업보육센터'를 2002년까지 450여개로 확대하고, 주요 대학내의 '신기술보육사업'과 '기술혁신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벤처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을 병역특례업체에 포함시켜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 계속해서 창업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셋째, 금년중에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을 현재 62개에서 69개로 확대하고, 2001년부터는 45일 이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민원자동승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창업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현재 전국에 30여개에 불과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2002년까지는 100개 이상으로 늘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애로를 해소해 주며, 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가 보완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담보능력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해 여성창

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여성의 SOHO 창업도 촉진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벤처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자금의 조달이 원활하도록 시장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업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자금공급 기반이 취약한 만큼 정부가 주도가 되어 각종 투자펀드를 설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금년 9월중 1천억원 규모로 출범시켜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며, 2002년까지 정부출자규모를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재원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하도록, 정부는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융자규모를 2,65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연내에 창업투자조합 참여자에 대한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기관투자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조합의 결성을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창의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게 함으로써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다.

촉진시킬 계획이다.

셋째, 산업은행이 운영중인 5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규모를 매년 1,500억 원씩 증액시켜 2002년까지 5천 억원으로 확대하여 첨단기술 분야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가의 꿈이 실현되는 코스닥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벤처기업이 나스닥시장에서 성공의 결실을 맺었듯이 우리나라도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유치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전용 수익증권의 규모도 200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수급기반을 대폭 확대해 나갈으로써 성공한 벤처기업이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벤

처기업간의 주식교환(swap)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조치 등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창업투자회사가 해외벤처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 갈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거점도시에 소재한 KOTRA사무실에 '벤처기업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금년 10월중 무역협회내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출 및 투자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애로의 해소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벤처기업이 미국 나스닥시장에도 상장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내년에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현지에서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중소기업 밖에 경영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

업과 대기업간 계열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 결과 이들 중소기업들은 보호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은 오히려 영세한 자본력과 경쟁부채 때문에 정체를 면치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갖추도록 하며, 자생적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현재 대기업과의 수급관계비율이 60%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교섭력이 강화되도록 '수탁기업체 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모범 협의회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시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부품업체가 전문화·대형화되도록 독자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능력도 배양시켜 나갈 계획이다. 예로서, 자동차나 전자관련 부품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핵심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중소기업으로 이전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중 10개 주요 대학에 '기술이전센터' 설립을 유도하여 보유기술의 이전, 이전기술의 로열티 분배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전담창구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자금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술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자금이 기술력 위주로 지원되도록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재 8개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도 운전자금 성격의 경영안정자금은 가능한 한 금융기관에 맡기고, 금융기관이 취급을 기피하는 기술개발투자와 최신설비도입 지원 자금 위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판로추진면에서 매년 1천개의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이 되도록 수출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외국기업과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문제점을 보완 시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의 판로가 확대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국가조달 입찰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금년부터 3년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고유업종 제도도 해제에 시제 도입을 통하여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은 창의적인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창의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전문화된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게 함으로써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발전되어 우리 산업의 고질적인 수입유발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면 대외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의 면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열기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21세기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다. ■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

대통령께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역설하신 바 있다.

‘생산적 복지’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Workfare)’로서 사회·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들이 ‘근로’를 통하여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등으로 분배구조의 악화가 초래되었던바,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 정책의 추진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실업대책을 보완하여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을 강



남석현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

화하며, 장기실업자·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제도의 확충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실업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

실업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창출·유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아울러 실업대책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두고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

선하고, 지식기반산업 부문의 인력양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고용창출 및 유지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제도정비 등을 통한 신규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산업 육성 등 전략적인 고용창출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한편,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겨난 일자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시책도 필요하다. 경기 및 고용상황에 따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지원 수준과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고용유지·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체제를 지식기반산업 등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로 개편하고자 한다.

금년말까지 산업별·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기능대학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분석, 전자상거래 등 44개 지식기반 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

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사무서비스·문화관광분야 등 신산업분야 자격종목도 매년 15개씩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 등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 대전·청주 등에서 시범운영중인 직업훈련카드제(훈련 voucher 제도)를 금년 하반기에는 충청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 훈련성과 분석과 취업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분석을 체계화하며,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훈련시설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한편, 개별 기업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단위별로 '인적자원관리팀'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노사가 공

노동부문에서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실업대책을 보완하여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장기실업자·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제도의 확충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동으로 인적자원관리와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적자원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으로,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갑작스런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실업대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약하여 그간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에 다소의 애로가 있었던바, 이를 감안하여 중기적으로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업훈련·구인구직·실업급여·실직자대부·공공근로·생활보호자 등 실업자 6대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연계하여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노동부 고용정보망(Work-net)을 기초로 하여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동향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LMI)를 내년까지 구축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고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업대책 집행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와 지자체(시·군·구)가 실업·사회복지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안정기관과 고용서비스 인력 등 직업안전망을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확충하여 고용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 및 산재보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먼저,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실업에 대한 1차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현행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하고, 최저 실업급여액을 현재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제도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88만개 사업장, 164만여명이 신규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로와 관련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산재치유 뒤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후유증상 진료제도(After Care)'를 도입하는 등 재활 및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만, 그간 실업자 등의 생계안정에 큰 기여를 해온 2차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률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사업시행 방식을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숲 가꾸기, 정보화 추진사업 등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업자 단순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도 장기실업자 등 특성별 주요 실업자 집단으로 특화하고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여성·장기실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가·지자체에 대해 장애인 2% 고용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를 두 배까지 지원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환경개선 시설 자금 용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에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여성에 대해서도 조리·미용 등 창업이나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저소득 실직여성'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육아·가사 등으로 정규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여성을 위해 '일하는 여성의 집'을 확충하여 텔레마케터,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전문직종 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의 장기화로 생계곤란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이 공공근로사업·직업훈련 등에 우선 참여하도록 배려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전국 모든 고용안정센터(93개소)에 확대 개설했을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실업대책의 보완, 사회안전망의 강화 그리고 취약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등과 함께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가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자복지 시책의 수립·집행이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근로자 자녀장학사업, 중소기업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I MF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외신뢰도를 회복하고 외환·금융 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실물경제도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7월 19일 채권단의 대우그룹 구조조정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우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투신사에서 수익증권 환매가 늘어남으로써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7월 25일 정부는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 정부는 저금리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의 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장

장안정을 위한 협조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마련하였으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진성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종합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금융시장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정부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와 금융기관들의 공동노력에 힘입어 장기금리가 안정되고 종합주가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우그룹 발행채권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신권,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보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투신 업계에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경위〉

99. 7. 25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
99. 8. 12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대책
99. 8. 23	금융시장 안정 관련 간담회
99. 8. 26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협력업체 지원대책

서는 8월 12일 대우그룹 채권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투 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증권환매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대책이 시행되었다.

대우그룹 채권 처리와 관련 「수익증권환매대책」 시행

동 대책에 따르면 8월 13일부터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 중 무보증 대우채권 해당분에 대해서는 환매시기에 따라 50~95%로 차등하여 우선 지급기로 한 반면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액 전액을 환매연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지급된 대우채권 해당

정부는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였다.

액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시가평가하여 정산하되 개인 및 일반법인의 경우 우선지급금이 최종정산금액보다 적으면 추가지급하고, 최종정산금액보다 많더라도 초과금은 환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8월 19일 이후 MMF 개인고객에 한해서는 환매시기에 관계없이 95%를 지급기로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수익증권환매대책의 시행에 따른 환매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투신사가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등을 통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유동성을 원활히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과 투신사간에 금리 등 지원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지원실적은 매우 부진하였고, 유동성부족을 겪는 일부 투신사에서 보유 채권을 시장에 매도하면

서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재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금융감독위원장 주재로 은행·증권·투신 등 전 금융기관장이 참여한 '금융시장 안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전 금융권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장들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투신사의 수익증권 환매 자제, 시장 금리 안정 노력,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하였다.

〈표 1〉 주요 금융지표 추이

	7. 26	7월말(A)	8. 26	8월말(B)	9.10(C)	C-B	C-A
종합주가지수(p)	872.94	969.72	950.88	937.88	961.98	24.10	-7.74
회사채 수익률(3년, %)	9.26	9.23	10.14	10.27	10.41	0.14	1.28
콜금리(1일물, %)	4.69	4.69	4.83	4.75	4.71	-0.04	0.02
환율(W/\$)	1,208.4	1,206.9	1,190.5	1,184.6	1,192.2	7.6	-14.7
외평채 가산금리(10년, bp)	275	255	240	241	244	3	-11
투신사 수탁고(조원)	256.0	254.9	238.7	236.5	231.6	-4.9	-23.3

한편, 8월 26일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일부에서 워크아웃 진행과정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의 불신이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이 동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은행들의 신규대출 기피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과 경기회복 등으로 금리상승세가 지속되어 투신권 전반의 수탁고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고 최악의 경우 98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한 저금리에 따른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마저 대두되었다.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 도모

이에 정부는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워크아웃 실시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 8월 26일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선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신사 보유 통화안정증권 중도상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리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채권 수요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채 전용 뮤추얼 펀드 허용(현재 관계법규에서 국공채 투자한도를 30%로 제한) 및 현재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채권형 뮤추얼 펀드의 만기단축(예 : 6개월)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공적자

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등에 힘입어 최근 단기금리의 안정 속에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가 지속되고 향후 금리상승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대우 수출환어음의 매입 등 협력업체 지원대책 마련

한편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실시 이후 금융권 자금의 우량 기업 집중 등으로 자금경색현상이 우려되면서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 표 2 〉 대우 협력업체 어음할인 지원상황

(단위 : 억원, 건)

		8.28~9.4	9.6	9.7	9.8	9.9	9. 10		누 계
							잔액	건수	
워크아웃 대상기업	금액	747	119	134	238	300	212	9,031	1,750
	건수	838	118	139	192	226	273	10,776	1,786
기 타 계 열 사	금액	57	6	8	7	7	10	998	95
	건수	124	20	19	14	18	29	1,367	224
계 열 전 체	금액	804	125	142	245	307	222	10,029	1,845
	건수	962	138	158	206	244	302	12,143	2,010

대두되었다. 사실 워크아웃 실시 이전부터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내외 불안감의 확산으로 대우협력업체들은 만기어음에 대한 대금회수와 대우계열사 발행어음의 할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실시에 따른 대우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채권 금융기관에서 대우 수출환어음(D/A) 7억달러를 매입하여 대우 진성어음 결제재원으로 우선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업체당 5억원 범위(9월 9일부터 10억원으로 한도 확대) 내에서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을 통하여 5천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우그룹 계열사의 상업어음 할인분을 지원토록 하였다.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은행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부도방지자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협력업체에 대해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기 집행토록 하였다.

아울러 대우협력업체 지원이

정부는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실시에 따른 대우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채권 금융기관에서 대우 수출환어음 7억달러를 매입하여 대우 진성어음 결제재원으로 우선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업체당 5억원 범위 내에서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자로 '대우협력업체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내에는 '금융시장 특별대책반' 산하에 '대우협력업체 지원대책반'을 설치하여 자금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으로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던 대우발행 진성어음의 결제가 완료되었고, 9월 들어 어음할인 지원도 점차 현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앞으로 정부는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추진 등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반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투신사로의 신규자금유입을 촉진하고 투신사에 대한 은행권 등의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제거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우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우계열사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 L/C 개설 및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등 대우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

주택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 한다는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주택건설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당면한 실업난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21세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향후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핵심주택정책 대상인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다가오는 새 천년에 선진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안에 주택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주택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주택정책의 핵심적 방향을 제시하심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성권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보다 쉽게 내집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가 보유율 전국 평균 60%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주택의 대량 건설·공급, 주택가격의 안정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97년까지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98년도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92.4%에 달하는 등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급률이 크게 낮은 실정이며, 서울 등 수도권은 여전히 70~8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 즉, 자가 보유율은 전국 평균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 대출비율이 70%에 이르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에 불과하여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무주택 임차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9만호로 전체 주택의 5.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임차가구가 민간의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따른 주거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97년말 외환위기는 소득격차 심화를 통하여 또 다른 주거 문제

를 야기시켰다. 98년중 주택가격이 유례없이 크게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주택 구입 기회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주택가격 하락 폭보다 소득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 분양가 자율화, 소형주택 건설의무 비율 폐지 등 규제완화 조치로 꾸준히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에 맞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 실업증가 등 주택 수요 부족과 주택업계의 자금난 등으로 주택건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수급 균형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위해 주거안정 대책 수립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은 우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금융 지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전세가 상승에 따른 임차가구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통해 입주예정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을 강화하며, 전세가 상승에 따른 임차가구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통해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충 및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이 쉽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소형 주택을 건설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10조 원 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하여 연간 30~35만호의 서민 주택건설에 중점 지원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요 택지의 5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함으로써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로 제고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형 주택 구입자금과 건설자금의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 지원조건을 내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구입과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

람에게 호당 3천~5천만원씩 대출해 주고 있는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8.5%로 1%P 인하하며,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1~2%P씩 인하하고 18평 이하 소형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

도를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주택분양자는 연간 약 385억원, 주택건설사업자는 약 438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설립추진 중에 있는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 수준에서 2002년까지 70%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허용되고 있지 않은 20호 미만 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하고, 주상복합 건물의 평균평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택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대폭 확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크게 상승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은 작년

에 전세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반등적 회복의 단계이지만 많은 전세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전세입주자 입장에서는 여간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세가격이 오를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주택가격 상승심리를 확산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인 전세가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무주택 서민의 전세값 등 주거비 부

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규모를 4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호당 대출한도를 구입자금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였으며,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에게 지원하는 건설자금도 호당지원 한도를 2천

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종전에는 지원되지 않던 18~25.7평 중형주택에 대해서도 호당 3천만원씩 지원하며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9%에서 7%로 대폭 인하하였다.

둘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매년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되, 금년에는 IMF 이후 악화된 서민

〈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조건 변경 내용

(단위 : 만원, 연%)

	자금종류	현 행		개 정	
		호당 융자한도액	이율	호당 융자한도액	이율
주택구입자금	분양중도금	3,000~5,000	9.5	3,000~5,000	8.5
	근로자구입	2,000	7.0	4,000	7.0
주택건설자금	공공임대주택	2,000	4.0	2,500	4.0
	재개발임대주택	1,500	3.0	2,500	3.0
	소형분양주택(18평 이하)	2,000	9.0	2,500	7.0
	중형분양주택(25.7평 이하)	3,000	9.5	3,000	8.5
	근로자용 분양주택 · 18평 이하 · 18-25.7평	2,000	9.0	2,500	7.0
		-	-	3,000	7.0
	근로자용 임대주택 · 18평 이하 · 18~25.7평	2,000	3.0	2,500	3.0
		-	-	3,000	3.0
	다세대·다가구 주택	1,000	9.0	1,000	8.0
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	1,200~1,400	8.0	1,400~1,600	8.0	
재개발·재건축 지원자금	재개발·재건축	2,000	9.5	2,000	8.5
전세자금	근로자전세	1,500	7.0	3,000	7.0
	저소득전세자금	750	3.0	1,000	3.0

들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2만호 늘어난 12만호를 건설하는 데 약 2조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8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를 호당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민간의 소규모 여유자금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주택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 임대하는 사람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저소득 세입자를 위해서는 3%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폭 확대(호당 지원한도 750만원 → 1천만원, 총지원규모 1,500억원 → 3천억원)하여 지원하며,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2004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자금 지원 역시 크게 강화(호당 지원 1,900만원 → 2,500만원, 대출금리 8% → 6%)할 방침이다.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부도 사업장 정상화 지원

외환위기 이후 많은 주택건설사의 부도가 발생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상당히

무주택 서민이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하여 연간 30~35만호의 서민 주택건설에 중점 지원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요 택지의 5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함으로써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로 제고할 계획이다.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지연되거나 공사추진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도사업장을 방치할 경우 입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이미 투자된 자금 회수가 어려워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도사업장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부도사업장 정상화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총 4천억원을 마련하여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자에게 5%의 저리로 잔여 공사비의 연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사자금을 지원하며, 주택 분양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주택보증회사에게도 부도사업장 정상화 촉진자금 1천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2002년 이후에는 주택보급률을 100%로 제고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거안정대책을 지난 8월 20일 확정·발표한 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 법령 개정에 필요한 절차 역시 순조롭게 이행 중이다. 나아가 주거안정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택업계, 금융지원기관 등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안정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2002년 이후에는 주택보급률이 100% 수준으로 제고되어 주택부족에 따른 전세가 파동이나 주택투기 문제는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주택기금 등 정책자금을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상류 계층의 주거 수요는 시장기능에 의거 자율적으로 해소되도록 유도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 및 세제지원 등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자력으로 내집 마련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및 주거비 부담 수준에 맞는 각종 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하고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택 수요자의 소득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의 비전

지 난 8월15일 20세기 마지막 경축일을 맞아 새 천년의 미래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며 중산층의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다는 원칙하에, 노인·병약자·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며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 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새 천년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는, 지난 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교육 및



이명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IMF의 지원을 받았던 경제적 어려움을 계기로 생산적 복지의 추진이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등장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립적·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다.

이 같은 국정방향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립,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강화,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국민의료기반의 구축이라는 네 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립

국가에 의한 생활보호를 받는 국민은 99년에 전국민 대비 4.2%인 194만명이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40년간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법」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단순보호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조성하였다.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자립자

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의 체계가 확립되며, 수급권자의 권리가 부각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전의 「생활보호법」상 거택 및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

고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생계비의 지급 대상이 99년도에 54만명에서 2000년도에는 최대 194만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받던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은 경기회복됨에 따라 생활보호를 벗어나게 되므로 대상자는 다소 감소할 것이다.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보장정책이 선진국형으로 변모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복지가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현행의 「생활보호법」과 같이 연령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 생

정부는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는 원칙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립,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강화,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국민의료기반의 구축 등 4대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가구별 자활방향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에의 참여, 생업자금의 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가 저소득 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일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측정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들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현실화 및 합리화함으로써 현재의 일률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탈피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진행

중으로 금년중에 전국민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 장치라 할 수 있다.

지난 87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생활보호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토록 하여 생활보호 업무의 능률성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99년중으로 4,2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으로 담당함에 따라 전문성이 높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이들의 지속적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립에 필수적인 요소라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에서는 정확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산망의 완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의 행정정보화사업이 조기에 마

무리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의 대전환 사업이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세민 집수리,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학교 및 체육시설 물 정비 등 단순 공공서비스 개발 등 제3섹터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활공동체에 위탁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 간의 협조와 협력이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강화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 강화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강화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은 1960년에 52.4세에서 1980년에 65.8세, 1995년에 73.5세이며, 2000년에 74.9세, 2020년에 78.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인구 중 6.6%인 305만 명에서 2000년에는 7%의 고령



화사회를 넘어 2022년에는 14%에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일본 26년인데 반하여 우리는 22년으로 굉장히 빠른 편이므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2003년까지 86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연금지급액도 5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0년까지 고령자 적합직종을 70개에서 90개로 확대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며, 2003년까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28,580→33,000개소)해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회관 증설(110→150개소) 등을 통

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경로식당(673개소, 월 84만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보건의료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요양시설과 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하여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은 물론 치매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치매요양시설을 24개소에서 50개소로 2003년까지 증설하고, 치매요양병원을 12개소에서 각 시·도별 1개소 이상씩을 2001년까지 증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노인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노인(99년 3만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검진

수가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촉진

우리나라의 장애인 규모는, 5년주기로 조사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2.35%인 1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9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장애인 가구의 60% 정도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2000년부터 장애인의 범주에 만성 신장·심장질환, 만성중증 정신질환 및 자폐증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보호·지원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의 규모는 99년의 110만명에서 2000년에 134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월 4만5천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급대상도 중증장애인(1~2급)에서 전체 생활보호장애인으로 확대(99년 6만1천명→2002년 12만5천명)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등 중증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수당을 새로이 도입할 계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립적·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자립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인 기반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운영을 내실화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99년 162개소 → 2002년 202개소)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을 우선 구매하는 발주지정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해 나갈 것이다. 자립자금의 용자는 그 대상을 확대(99년 1,000가구→2000년 1,200가구)해 나가는 한편 용자액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것이다.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의 실시(2000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보조기 등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시·청각 장애인 보장구(음성시계, TV자막수신기)도 무료로 교부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은 공공건물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건물 등의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율을 98년에 47.4%에서 2003년에 65%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등의 복지 강화

9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 보육사업을 200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며, 만 5세 미만 저소득층 보육료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시·단기보호, 아동복지관을 통한 방과후 지도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의 용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수준도 인상하며,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가족출타시 노인을 보호하는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의 내실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할 것이다.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적 합의로 제정·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예정대로 2000년 1월부터 의료보험 통합체계를 출범시킬 것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소속직장과 거주지에 따른 조합별 분리운영방식이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어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적정급여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1980년 이후 의보통합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4차에 걸친 국회의 의보통합결의(81, 89, 97, 99년), 대통령 선거공약 및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98년 3월에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 그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포되었으며, 99년 10월 1차 통합(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2000년에 직장

의료보험을 포함한 전체 통합체제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의료보험 통합의 연착륙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현행 소득·재산기준 체계를 당분간 계속 적용(보험료 변동 없음)할 것이며,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보험재정을 한시적으로 구분하여 보험료 격차를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의료보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의 정착

국민연금은 노령·폐질 및 사망 등으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전국민의 93%인 1,624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사업은 99년 4월 15일에 일제신고 결과, 소득하향 신고 및 납부예외자 과다(481만명)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상향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징수율 제고와 납부예외자 가입유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소득신고 평균액이 84만2천원(99년 4월)에

서 87만6천원(99년 8월)으로 제고되었으며, 징수율도 대폭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연금혜택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료기반의 구축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국민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평생건강관리의 기본모형을 정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며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질병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주요 질병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암, 고혈압, 당뇨병, 간염 및 결핵 등 5대 질병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품법을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의약품물류조합을 설립하며, 국민보건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별 응급의료센터(8개) 및 각 지역응급의료중심병원을 설립 지정해 운영할 것이다. ■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 나운 천년을 마감하는 1999년도에 서서 바라볼 때, 새로운 천년기의 도래와 지식기반 사회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과 정책의 기본틀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환경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그간 외형적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 면이 컸었다. 그 결과,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한강은 물론 영호남의 젖줄인 낙동강과 영산강도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대도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1차적으로 환경자원의 가치와 제한성을 무시하고 환경을 공짜 즉, 자유재(free goods)로 취급하여 손에 닿는 것은 닦치는 대로 이용하고 개발해온 우리의 잘못된 의식구



남재우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또한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못한 국토이용,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형 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추진 등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이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새로운 천년기는 희망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자체를 염려해야 할 시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의 번영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

한 개발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께서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언급하신 바 있다.

국가환경정책비전 제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환경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하겠으나,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정책에 추가하여 4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상을 전망하고 환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및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에 ESSD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을 저감하기 위해 대도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는 것이다.

끝으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의 용수확충대책 추진이다.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성에 따라 21세기 환경문제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청사진을 담은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을 200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는, 21세기에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상을 전망하고, 각 분야별로 이에 따른 능동적 적응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21세기의 환경여건 속에서 사회의 행위주체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문명사적 전환기에 맞추어 새로운 윤리·가치관을 모색하고, 토지제도 및 국토이용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로, 국제정치질서의 변동과 재편에 따른 환경운동의 세계화와 NGO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화시대의 환경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환경정책에 추가하여 4개 시책 즉,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 제시,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 강화, 대도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부산·경남지역의 용수확충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것이다.

셋째, 자원절약형 생산·소비체제를 구축하고, 생태 중심의 창조적 과학기술 진흥 그리고 통일시대의 한반도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코 밀레니엄 시대의 문화·윤리·가치관」, 「자원절약적 생산소비체제」, 「환경친화적 과학·기술문명」, 「한반도 생태공동체」 등 5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연구를 위해 관련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에코 밀레니엄 국가비전 연구단' 및 분야별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문제는 토지이용에서부터 비롯되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최근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건설·정비 등 물리적 계획에 편중되어 도시의 환경문제 심화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도시

계획 수립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입안시 환경성 검토(환경현황, 전망, 환경대책)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며, 도시의 내부녹지와 외부녹지를 연계한 그린네트워킹화를 추진하여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고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육성·발전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환경평가 및 타당성조사를 강화하

여 환경오염 및 훼손의 사전예방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도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공기는 한 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환경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등 오염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도시의 공기오염은 국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심화되었다.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서울 85%)이며 특히, 대형 경유자동차가 문제

이다. 전체 자동차의 4%에 불과한 버스·트럭 등 대형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공해의 47%를 차지(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의 50배 배출)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또한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매연 등은 오존오염과 시정장애 현상을 가중시키고, 폐질환 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폐암 발생환자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점도 이와 같은 대기오염에서 주로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범인 대형 경유차

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에서 운행빈도가 가장 많은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사업으로 천연가스(CNG) 버스를 보급하고자 한다.

우선, 금년중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 충전소 입지기준 마련 등 기반정비를 완료한 후, 2000~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중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서울 및 6개 광역시, 수원)의 노후 경유시내버스 5천대(충전소 100개소)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어 2007년까지 대도시의 나머지 경유사용 시내버스 1만 5천대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이다.

천연가스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매연(미세먼지)이 전혀 나오지 않는 등 오염물질 감축효과(오존영향물질도 70% 이상 감축)가 커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현재 $68\mu\text{g}/\text{m}^3$)는 WHO 권고수준($50\mu\text{g}/\text{m}^3$)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오존오염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대상 물질인 이산화탄소도 경유차보다 15% 이상 적게 배출하고 소음도 반으로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오염물질 감축효과가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

〈표〉 에코 밀레니엄 국가비전 추진계획 개요

분 과 명	연구 과제
에코 밀레니엄 시대의 문화·윤리·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문화·윤리·가치관 모색 • 전통사상의 재조명·재발견 • 환경윤리의 실천적 비전 • 환경가치의 확산·교육 방안
개방과 자율 시대의 녹색국가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치 질서의 변동과 재편 • 협력·연대·참여의 녹색공동체 • 환경운동의 세계화와 NGOs • 지방화시대의 환경자치
자원절약적 생산·소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질서와 패러다임의 전환 • 환경친화적 수자원·에너지·천연자원의 개발 이용 • 청정생산체제의 구축 •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정착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 선진국의 건설과 환경보전 • 문명의 전환과 신과학 운동 • 생태중심의 창조적 과학기술 진흥 • 생명보전을 위한 환경안전망의 구축
한반도 생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시대,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 녹색 도시·정주공간의 조성 • 환경중심, 생태보전의 신농업 구현 • 연안역과 도서환경의 보전

를 앞두고 일본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부산·경남지역 용수 확충

부산·경남지역은 광역상수도를 개발하더라도 댐 하류지역의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등 용수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부산·경남권 필요수량(1일 150만t)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수원확보 방안으로서의 '강변여과수' 개발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부산·경남지역에 안정적인 상수원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규모의 타당성 조사사업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그간 개발 가능지로 조사된 12개 지구 중 환경부의 시범개발사업, 창원시의 자체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검증된 이룡·하천·갈전·용산 등 4개 지구에 대한 개발 타당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 237억원을 투입하여 함안 이룡지구에 2만t/일, 창원 갈전지구 5만t/일

21세기 환경문제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 청사진을 담은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을 200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추어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에코 밀레니엄 국가비전 연구단' 및 분야별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등의 실규모 시범개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 20억원을 정부예산에 확보하였다.

앞으로, 실규모 시범개발사업 성과에 따라 사업을 4개소로 확대하고 국고 2,569억원을 투입하여 1일 50만 t/일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하루 50만 t 규모의 강변여과수 개발 및 사용이 널리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나온 천년은 환경과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힘써 온 시대였다. 그 결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나 후손의 삶의 터전인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호르몬 문제 등 도처에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새 천년기는 물질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환경적 쾌적성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mental sustainability)이 하나의 길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독일 미래위원회 권고는 시대적 현실을 직시

한 대표적 결론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우리 자신과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전의 '千年之大計'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과 공존·공생하는 터전을 마련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입안단계부터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우리 모두 생명이 숨쉬는 환경지키기에 다같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인터넷 PC 보급 확산 통해 정보화 촉진

지 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은 “21세기에서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셨듯이 다가오는 새 천년의 지식정보사회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인 1PC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그동안 ‘Cyber Korea 21’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고속화, 전국민 정보화교육 확대, 국가·기업·개인의 생산성 향상, 신산업 육성과 신규고용 창출 등의 정책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PC’ 보급정



강문석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장

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학교교육·숙제 등을 위해서도 컴퓨터가 필수적이나 서민층에게는 컴퓨터 가격이 너무 비싸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PC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관련 정보의 취득이 어려워 정보화의 대열에 동참하는데 애로가 있어 왔다.

또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각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이 컴퓨터가 정보인프라에 접속하여 실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나 98년말 현재 국내 PC 보급대수는 729만2천대로 100

인당 16대에 불과하며, 이중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는 400만대 정도로 100인당 9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PC 보급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PC의 가격(무료소프트웨어, 유통비용 등이 주요원인임)을 들 수 있다. 98년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1천달러 이하의 저가형 PC 판매비율이 40%에 이르렀으나, 국내 PC 가격은 120~240만원(15" 모니터, 부가세 포함)으로 PC 가격이 높았다.

그리고 PC 보급부진과 함께 인터넷 사용료 및 기존의 사용시간에 비례하는 통신요금 체계에 따른 통신료 부담이 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컴퓨터에 끼워 파는 공짜 상품으로 인식하여 불법복제가 성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소프트웨어 업체의 개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실

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화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인터넷 및 정보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단말기인 멀티미디어 PC를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PC 보급

첫째로, 저가의 멀티미디어 PC를 보급할 것이다. 동 PC의 사양은 하드웨어의 경우, CPU 400MHz 이상, RAM 64MB 이상, HDD 6.4 GB 이상, CD-ROM 40배속 이상, 모뎀 56Kbps, 3D 그래픽카드 8MB, Speaker 120W 이상이고, 소프트웨어는 한글윈도우 98, 워드프로세서, 통신용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PC'로 이름지어진 이 PC는 2000년에 출시 예정인 소프트웨어, 게임에도 충분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인터넷·워드프로세서 등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3차원 게임 등 고급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고급 멀티미디어 PC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보화 추진을 촉진하고 인터넷 및 정보서비스 보편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저가의 멀티미디어 PC를 보급하고, '국민컴퓨터구입적금' 제도를 도입하며, 우체국을 통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저렴한 가격의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 요금의 정액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격상한선은 15" 모니터를 포함하여 100만원 미만(17" 모니터인 경우는 10만원 추가)이다. 다만, 실제 공급가격은 업체별로 80만원대에서 90만원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로, PC를 일시불로 사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 컴퓨터구입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컴퓨터구입적금은 우체국적금 가입자에게 우선 컴퓨터를 설치해준 후 적금만기시 컴퓨터대금을 보전처리해 주는 적금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6~36개월(월단위), 가입한도는 500만원 이하이다.

적용이율은 가계우대정기적금 이율에다가 우대이율을 추가한 것이 될 것이며, 컴퓨터적금 가입시 가계수표대월 약정서류를 제출하고 적금가입후 2회 이상 월불입금 납입시 컴퓨터를 우선 설치해 주며, 적금만기시 컴퓨터대금으로 지급한 대월금액을 상환

하고 남은 금액은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셋째로, 우체국을 통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판매시 소프트웨어를 끼워팔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우체국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계획이다.

우수 소프트웨어 카탈로그(패키지 소프트웨어, 게임, 교육용 CD-ROM 등)를 우체국에 비치하여 주문을 받아 통신판매하는 방식 이외에 우체국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epost.go.kr>)에서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넷째로, 저렴한 가격의 인터넷 보급 및 데이터통신 요금의 정액제를 추진하고 있다. PC통신 사업자들과 ISP 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여 현재 각각 1만원 수준인 PC통신·인터넷의 가입비 및 기본이용료를 가입비는 면제하고 월 기본이용료는 4천원 이하로 인하를 유도하였다.

다음, 사용시간 비례에 따른 현행 데이터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액제의 도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의 PSTN(일반공중전화망) 및 ISDN(디지털 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PC

통신 접속서비스(014XY)에 대하여 시간제한 정액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간대별 정액요금은 월 33시간 사용요금은 10,000원, 66시간 사용요금은 20,000원, 150시간 사용요금은 38,000원 수준으로 하며, 고속 데이터통신을 위한 ADSL 요금은 현행 4만원 정액제에서 3만원대 정액제로 인하를 유도하였다.

프로젝트 참여업체는 PC 설치, A/S 등을 일정기간 수행

정부는 저가 멀티미디어 PC를 '인터넷 PC'로 명명하여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브랜드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PC의 설치, A/S 등은 해당업체가 일정기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 2,800여개 우체국은 PC 구매신청 및 인터넷 가입신청을 접수하여 PC 업체 및 ISP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기존의 우편주문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카타로그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

동 계획에 참여하는 PC 업체는 1차로 주어진 PC 사양 및 가격을 만족시켰고, 2차 조건인 PC 설치계획, A/S 계획, PC 매뉴얼 제공계획 및 마케팅 계획이 우수하였다. 한편, PC통신 사업자 내지 ISP 사업자로서 가격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로 모두 참여토록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PC 대량보급에 따른 기존 업계의 보호를 위하여 단일 사양의 제품만을 보급토록 하여 여타의 주문형 모델, 고가·고성능 모델 및 노트북 제품의 기존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의 유통체계를 보호·활성화하기 위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PC 업체의 경우 동일 모델을 동일 가격대로 기존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하에 지난 9월 2일 연구기관·학계·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여업체로 12개 PC 업체와 4개 PC통신·인터넷사업자를 확정하였다.

참여가 확정된 PC 업체는 PC뱅크(98만 8,900원), 멀티패밀리정보산업(98만원), 현주컴퓨터(95만원), 용산전자단지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97만 3,500원), 엑스정보산업(99만 9천원), 세진컴퓨터랜드(99만원), 엘렉스(99만원), 세지전자(88만원), 컴마을(99만원), 현대멀티캡(99만원), 주연테크(93만원), 성일컴퓨터(94만원) 등이다.

또한 인터넷보급사업자는 한국통신하이텔(가입비 면제, 기본이용료 4천원), 삼성SDS(가입비 면제, 기본이용료 4천원), 한국

〈인터넷 PC 및 패키지 상품 모델〉

- 브랜드명 : Internet PC - 업체명
- 패키지 상품 구성
 - 1) PC
 - 하드웨어 사양
 - 기본규격 : CPU 400MHZ 이상, RAM 64MB 이상, HDD 6.4 GB 이상, CD-ROM 40배속 이상, 모뎀 56Kbps, 3D 그래픽카드 8MB, Speaker 120W 이상
 - 선택규격 : 모니터 15", 모니터 17"
 - 소프트웨어
 - 한글윈도우 98, 워드프로세서, 통신용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
 - 가격 : 15"모니터 포함 100만원 미만 (17"모니터 포함시 10만원 추가)
 - 2) 인터넷 사용료
 - 기본이용료 월 4,000원 이하
 - ※ 014XY망 이용시 시간제한 정액제, ADSL 이용시 월 3만원대 정액제
 - 3) 체신금융 대월이자
 - 10.5%(현행 가계수표 대월이율)

통신(가입비 면제, 기본이용료 3천9백 원), 나우콤(가입비 면제, 기본이용료 4천원) 등이다.

일반 국민이 PC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로, 99년 9월 20일부터 개시한 컴퓨터 구입적금에 가입한 후 1개월(2회 불입)이 지난 99년 10월 20일 이후부터 PC를 공급받을 수 있다.

둘째로, 개인이 컴퓨터구입적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체국에서 일시금을 지불하면 PC 구매가 가능하며, 우체국 사이버쇼핑몰을 통해서도 PC 구매가 가능하다.

셋째로, 이번 계획에 참여하는 PC업체가 기존 유통망을 통해서 동일 모델의 PC를 공급하는 경

‘인터넷 PC’ 보급·확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일반서민층에 PC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한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농어촌 등에 정보화 혜택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 경감으로 인터넷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에는 기존 유통점에서도 PC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민층에 정보화 혜택 확산되고 지식정보사회의 조기정착 가능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PC 구매가 어려운 일반서민층에 PC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한 기반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어촌 등에 컴퓨터를 활용한

고급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정보화 혜택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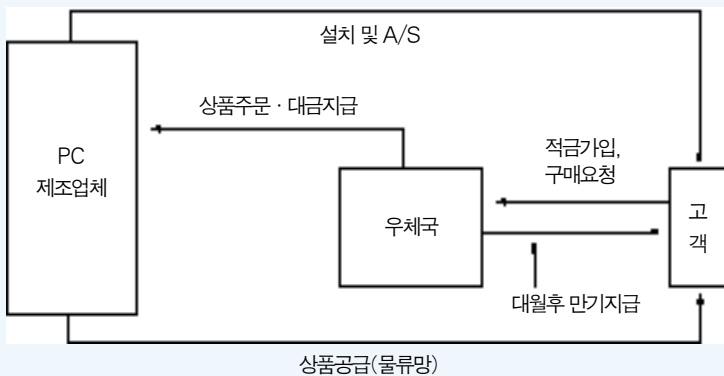
또한 PC 구입과 인터넷 이용의 패키지상품 보급 및 정액제 등 인터넷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 경감으로 인터넷 보

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은 그동안 컴퓨터교육장, 소프트웨어창업실 지원 등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 계획의 추진으로 우체국은 PC 구입, 인터넷 가입, 소프트웨어 구입 등 지역의 정보화 수요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정보화의 거점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PC의 보급·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시장, 인터넷사업, 각종 콘텐츠사업, 전자상거래사업 등 지식정보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고 세계에서 제일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Cyber Korea 21’의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사업추진 흐름도



어업인 소득증대 및 부담경감 대책

지 난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부문을 개선하며, 어가부채의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바꾸어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며 모든 산업에 신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수산대국으로서 수산업은 IMF 경제체제로 어려웠던 지난 98년 8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효과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어가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농가 및 도시가계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94년 UN 해양법협약 발효 및 EEZ 선포로 인한 어장축소와 어업위축으로 침체된 수산업을 21세기 경쟁력 있는 산업으



김영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9년 8월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업인 지원대책과 수산인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수산발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1세기 수산업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담은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회복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1999~2004년까지 총 6조7천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1,68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을 2004년에 2,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어업인 소득 증대

정부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생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생산성 제고

먼저 불법어업과 남획으로 고갈된 연근해 수산자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억마리 규모의 수산종묘를 대량 방류하고 어류들의 산란·휴식장소인 인공어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획단계는 물론 유통단계에 이르

기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이 자진 참여하는 '새바다운동'을 제2건국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며, 주요 관리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어자원관리를 위한 '마을 자율조업구역제'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 수준에 맞게 어업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어선의 채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9~2004년간 5,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67척을 감척하고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해 철수하는 연근해어선을 활용하여 동남아·러시아 등 해외 신어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어업협정으로 상실한 어획량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르는 어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든 어업인이 참여하는 양식, 자원조성, 레저를 겸한 대단위 6개 복합양식단지를 우선 개발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동·서·

정부는 어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농신보가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을 증액하여 어업인이 보증채무로 연쇄도산하는 고리를 단절시켜 어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남해 및 제주도에 바다목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조성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한·일 공동어업 자원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소득의 기반시설인 어항 287개를 2004년까지 완공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160개권역의 어촌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도시민의 관광과 어촌소득을 연계하는 어촌 체험관광 마을 25개소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9년 6월 농신보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99년 7월에는 영어자금 금리를 6.5%에서 5.0%로 인하하였고, 99년 9월에는 고금리 상호금융대체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1,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부처와 유기

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영어자금의 공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을 2000년까지에서 2005년까지 연장하며 공급대상에 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이 추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00년말에서 200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현재 41개 적용 품목을 어선수리용역 등 어로활동에 직접 수반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복잡한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하여 어촌지역의 유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감천) 및 통영지역에 산지도 매시장을 건설하고 단순 위탁판매에 그쳤던 산지위판장의 기능을 가공·포장도 가능하도록 종합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각 생산중심지에 소규모 수산물 가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소규모 영세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경영지도도 더욱 강화

〈표〉 어가소득 추이

(단위 : 천원, %)

	1988년	1998년
어가소득	6,821(88)	16,794(66)
농가소득	8,130(105)	20,494(80)
도시가계소득	7,760(100)	25,592(100)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유통시설 현대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주지역 도매시장 신설 및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 증축, 수도권에 직판 위주의 유통센터 건설을 통해 기존도매시장과 다른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협개혁을 통해 생산단체로서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산물 전문매장인 바다마트 시설을 2002년까지 75개소를 더 늘려 대형수산물 유통체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까지 전국 5대 수산물 물류권체제를 구축하고 중부권에 수산물물류센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산지-소비자 직배송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직거래 비율을 5%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전국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지수협 및 도매시장의 가격 및 물량정보를 전국적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수산물의 규격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사이버 직거래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수산유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산 감천항을 '관세자유지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고 여기에 14개소 38만 규모의 초현대식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을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실직어선원 고용 추진

한·일 어업협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어선원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월분의 실업지원금과 60억원의 귀어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900명을 향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실직어선원의 고용지원을 위한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여, 상선·원양어선 승선 희망자에 대한 무료교육 실시와 귀어가 창업교육도 내실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채무부담 해소하고 신지식어업인을 육성

현재 어업인들의 연대보증 채무액은 총 1조 3,597억원 수준이며 이 중 개인 보증액은 1조 1,372억원, 농신보 보증액은 2,225억원에 달한다.

특히 상호연대보증은 성실하게 어업을 경영해온 건전어가의 연쇄도산까지 불러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의 개인 연대보증 채무 중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대출금(8,700억원)은 농신보에서 인수하여 보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신보가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을 증액하여 성실하게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이 보증채무로 연쇄도산하는 고리를 단절

시켜 어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수산업을 이끌어 갈 창조적 정신을 가진 신지식어업인 2만명을 집중육성하는 한편 수산부문의 지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후계인력을 99년 1만2천명 수준에서 2004년까지 2만명 수준으로 양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문어업경영인을 육성하고 28개 수산기술관리소를 통한 현장 경영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어업시기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문어업경영인 교육을 강화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5천명의 어업인 후계자와 325개 영어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연 1,800명의 어업인에게 현장교육 및 어촌청소년 2천명을 대상으로 어촌청소년 수산교실을 운영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이 관련정보를 쉽게 이용하고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민의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교육과정에 정보화 교육을 필수로 하고 어업인 정보화마인드 조성을 위한 PC 보급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 달 의 초 점

산업자본의 제2 금융권 지배

소유 규제가 최선의 대안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 근 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주요 현상 중의 하나는 투신·증권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성장이 두드러지다는 것과 재벌계열 소속 관련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계열 금융기관들, 계열사에 대한 자금공급원 역할

경제위기의 회복추세와 함께 주가가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금융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투신사의 수탁고는 1997년말 87조원에서 1999년 6월말 242조원으로 1년 반 만에 2.8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금융구조조정 기간중 은행 등 200여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것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재벌, 그것도 5대 재벌산하의 금융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5대 재벌 계열 투신사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 5.8%에서 1999년 3월 현재 31.6%로 증가하였고, 제2금융권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중 17.6%에서 34.0%로 증가하였다.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 자체는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불어난 자금이 반드시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있다는 것이다. 밝혀진 사례

에 따르면, 일부 계열금융기관들은 과거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지속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자금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퇴출된 거평그룹의 한남투신 사금융화 사례와 대한생명의 부실화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투신의 계열사에 대한 콜자금제공 위반사례, 서울투신의 경우 2대 주주인 대우그룹에 대한 무모한 자금운용,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개입, 빅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 부실대출 등 이제까지 겹으로 드러난 계열금융기관의 사금융화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최근 정부는 투신·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및 금융감독 강화와 외부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는 예상되나 이는 결코 최선의 해결방안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의 강화(현행 10%에서 7%),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 한도 강화(현행 3%에서 1%) 등 자산운용규제의 강화는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크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대 재벌의 경우 각 재벌 그룹이 주식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7% 내외인데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한 기본적인 자산운용전략조차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은 최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이들 기관에 자금을 위탁한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물론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로 인한 관련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는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추세하에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둘째,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열금융기관은 제 3자를 이용한 우회 대출이나 타계열소속 금융기관과의 교차대출(cross lending), 업무교환(barter) 등을 통하여 이러한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최근 모계열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시 관련계열사에 대출하거나 이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아무리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우회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의 불공정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셋째, 현행 법체계상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미약하여 새로운 감독체제 하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계열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주주경영자가 전권을 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는 희소한 금융자원의 배분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낳는다. 특히 금융기관을 소유한 모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하여 이를 퇴출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배구조상의 특징과 경영자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전문경영자들은 다수의 주주, 투자자 또는 계약자들보다는 소수의 대주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규칙(rule)보다는 관계(relationship)를 보다 중시하는 사회·조직 문화로 인해 대주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넷째, 감독체계 또는 법체계의 내용보다는 이의 집행 여부가 보다 중요한데 현재는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이 전반적인 국민적 지지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경제 및 정치적 기류의 변화시 현재와 같은 제도개혁의 의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예를 들면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재벌소속 계열기업간 불공정 금융거래를 조사하는 데 있어 '계좌추적권'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일 뿐이다.

소유 규제가 최선의 대안

여기서 우리는 회계공시제도 및 감독제도 등의 발달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금융기관들이 기업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는 희

소한 금융자원의 배분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낳는다. 특히 금융기관을 소유한 모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하여 이를 퇴출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지며 이는 물론 기업으로 하여금 외형 위주의 공격적 경영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결국 금융기관이 갖는 상당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는 단순히 관련 금융기관의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최적금융구조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낮고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과 이해상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엄격한 감독체계의 미정착, 기업과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원칙보다는 인적 관계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불법적 사금융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경영 및 조직 문화, 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권 또는 사유권제도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가 외국의 경우보다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시 관련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재벌계열에 속해야만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은 근본적으로 그룹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자본에 연계되지 않고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국내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결코 특정 대주주의 존재 또는 산업자본과의 연계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한계를 갖는다.

제도적으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산업자본과 연계된 자본은 국내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독립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금융지

주회사법을 제정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 세제상 비용을 일정기간 면제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산업과 금융의 분리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실시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전체 그룹자산 중 실물기업의 비중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현대화 법안(Financial Modernization Bill)에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로부터의 영업이익을 총이익의 15%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높은 한도를 설정(예를 들면 50%)하고 차츰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금융부문의 분리 또는 금융전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에서는 모든 기업여신 관련 금융기관 및 보유자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산업자본의 주식소유를 제한한다. 금융기관의 소유규제는 이미 국내와 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로 해석하기보다는 금융제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식매각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추정에 따르면 산업자본 소유의 상장 및 비상장 비은행금융기관의 필요 주식매각액은 12조원 내외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80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의 점진적 매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유 규제, 실리 없고 부작용만 크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제 2금융권 문제의 발단을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정부가 1970년대 이후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차원에서 육성하고 각 분야 별로 칸막이식으로 나누어 영업권을 나누어주면서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제2금융권의 소유제한으로 얻을 것은 없다

최근 들어 제2금융권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전체가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 특히 투신사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환경 변화 및 정부 정책에 기인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해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5대 재벌에 대해서는 진입이 제한되었던 업종에 진출을 허용하였고, 은행마저 퇴출을 당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는 5대 재벌 금융기관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뮤추얼 펀드와 같은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자

본시장 육성 정책과 금리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한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 허용 정책이 제2금융권 특히 투신권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정부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단지 재벌과

제2금융권의 분리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우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논의와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에 대한 논의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선진국의 경우도 은행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제한은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에 대한 정당성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단적인 증거가 어렵다.

은행의 예를 들어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규제 논의가 얼마나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인지 생각해 보자. 국내 은행의 경우 소유에 대한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변해 왔으며, 불과 반년 전에는 은행에 대해서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소유제한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다. 무엇보다 은행의 경우 소유한도가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전환은

행 8%로 각기 다른데다가 정부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외국인은행주식 취득시 10%까지는 신고이며 그 외 33% 초과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과의 역차별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소유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소유제한으로 얻을 것은 없다고 본다. 또한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는 금융 소유집중이 배제된다고 할지라도 투자집중이 있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규제의 강도를 높여 눈에 보이는 5대 재벌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규제강화는 사금고화를 막기보다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해 및 투자자의 권리침해 등 부작용만 부를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은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결제기능을 맡고 있는 은행에 충격이 왔을 경우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의 육성 조치 등으로 자본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이번 외환위기를 계기로 회계·공시제도가 강화되고,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기업 경영지배구조도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었으며(99년 시행),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화되었다(98년 2월).

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비율 축소 등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대기업 집단의 제2금융권 지배 확대가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연계 우려감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차입금 손비이자 축소, 상호채무 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 및 동일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논의와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에 대한 논의는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도 은행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제한은 없다. 금융기관
소유규제에 대한 정당성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단적인 증거가 어렵다.**

열 대출 및 투자한도제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시장 규율보다 효과적인 감독강화는 없다

현재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이 불충분한 때문이 아니라 감독기술 수준, 감독관련 자원의 한계,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관계의 부족 등 감독인프라의 문제 때문이다. 감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당분간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당국 직원들의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해외에 연수 보내 선진감독기법을 배우게 하고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감독기관 자체의 감독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공시기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늘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규제가 없어도 사금고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업경영 정보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가 발달되고 내부자거래 규제 및 부당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처벌 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의한 규율과 감시보다 효과적인 감독강화 방법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의 금융기관 계열사 편법지원, 약정사항위배 등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금융기관 내외부적 감독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기관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제도적이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감독당국이 세부적인 문제에까지 감독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내에 자체통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하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내부지배구조 개선은 금융기관 경영진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내부지배구조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 및 감독기능 등 외부지배구조(external governance)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자산운용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제2금융권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경우 동일 계열과 자기계열에 대한 각종 양적 자산운용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추가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사용이나 부실가능성이 높은 계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행위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기계열 및 타계열의 자산운용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객자금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남용이 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오히려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재 5대 계열 주식의 시가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실제로 5대 계열사의 계열사 주식투자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제2금융권 시장은 다른 어느 시장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므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된다면 시장이 감시기능을 다른 어느 규제보다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적형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홍보하는 점

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펀드 운용내역의 정기적 공개, 실효수익률 비교자료 제시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최대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권리만큼 책임도 분명히 하여 투자상품의 손실은 투자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으로 지배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내부 견제장치나 내부 위험관리장치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상장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를 높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경영층이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상임 이사가 다수 주주에 감시받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사외이사제 도입은 강제성을 두기보다는 은행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타금융권의 사외이사 도입 후의 성과를 보아가며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바꾸어 개방화된 금융환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제2금융권의 규모는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98년 3월말 현재 국가별 상위 3대 대형 증권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3대 증권사(대우, 현대, LG)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각각 미국의 0.4%와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금융의 추세라 할 수 있는 금융의 자율화·개방화·대형화·겸업화 등은 국내 금융산업에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의 경우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금융산업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2금융권의 규모 및 경쟁력이 아직 미천한 상태에서 과도한 규제는 막 자리잡기 시작한 제2금융권의 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다.

제2금융권의 시급한 과제는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이다. 무엇보다 일련의 모든 제도와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제2금융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I)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일

반적으로 카르텔(Cartel)이라 불리는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경쟁제한행위 중 그 경쟁저해성이 가장 명백한 행위이다.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도 이들이 서로 담합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상호경쟁 없이 시장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마치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시장기능을 인위적으로 마비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경쟁압력이 없어짐에 따라 기업의 창의력 발휘, 신기술 개발,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가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하고 진입을 막는 등 궁극적으로 경제전체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고 경제전체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의의

세계 주요 각국은 독점금지법 등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제1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장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사업자간 합의하여 ②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된다(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사업자간 합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독립된 복수의 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본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이다. 사업자단체를 주체로 하는 공동행위의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제된다.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의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의사의 표현에 의한 합의이든 암묵의 소극적인 의사의 표현이나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르는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이든 그 방법을 불문한다.

경쟁자간의 합의는 계약서·협정서·결의서 등의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암묵적 합의나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더라도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합의의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보면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강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자간의 공동행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합의를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합의는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제반 정황증거에 의한 추정입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 집

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6년부터 공동행위 추정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서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합의의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간 외형적 행위가 일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 행위의 일치와 부당한 경쟁제한의 입증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하는 것은 사업자간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 등을 고려해 볼 때 합의가 있었음이 추정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의 성립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간의 행위가 외관상 일치함을 밝혀야 한다. 행위의 일치라 하는 것은 카르텔협정의 준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간의 행위가 완전히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진 경우에도 행위의 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어떤 범위까지를 행위의 일치로 볼 것인가는 확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객관적으로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형적으로 행위의 일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개별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관

단의 결과임을 입증하게 되면 공동행위의 추정을 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추가적 요소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당사업자간 가격인상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비밀회합을 하고 그 접촉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사업자간 가격이나 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하는 경우, 특정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인상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을 단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원가 상승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셋째, 당해 사업자들이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가격변동의 경제적 요인이 해당 사업자 전원에게 공통되지 않는 경우, 원재료 수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원가구조가 다

른데도 장기간에 걸쳐 가격변동의 패턴이 같은 경우 등이다.

넷째,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이다.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들에 대해 동일한 가격책정을 요구할 수 없는 공급자 우위시장인 경우, 거래의 빈도가 낮으며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동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적은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업자간의 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추가적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당해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의 추정과 관련,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식적 동조행위(conscious parallelism)이다. 의식적 동조행위란 사업자간 직접적인 의사교환에 의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의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적 동조행위는 경쟁사업자간 행위의 일치와 경쟁제한에 대한 공동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1~2개 선도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또는 가격인상 사실을 유도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가격을 유사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면 외형적으로 행위가 일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을 빙자한 암묵적 합의로 인한 반경쟁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범위반이 되는 암묵적 합의와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행위를 감안하여 내린 독자적인 의사결정은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형적 일치 이외에 합의를 추정해 낼 수 있는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고 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법으로 인정된다.

행위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간에 모의, 합의의 성립, 참가사업자의 실행행위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법집행상 합의만 하고 그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행위가 성립되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92년말 법 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의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됨을 명시하여 이와 같은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96년말 법 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의만 있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보완함으로써 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모두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유사한 조항은 셔먼법 제1조이다.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기타 형태에 의한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제3조에서 “사업자는 … 부당한 거래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한 거래제한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기타 어떤 명의를 가지고 하든지간에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유지·인상하

거나 또는 수량·기술·제품·설비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상호 그 사업 활동을 구속 또는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일본도 사업자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이다. 경쟁자들간의 합의는 명시적 약정에 의해 입증될 수 있지만, 위법행위는 은밀히 계획·수립되므로 명시적 합의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합의는 거의 담합피의자들의 행위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추론에 의해 입증된다.

이와 관련 의식적 동조행위에 대한 법적용 경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단순한 동조적 행위 이외에 합의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고 동조행위에 의한 경쟁제한효과가 입증되는 경우 위법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요소로는 공동행위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참가기업 각각의 개별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각 기업의 고위경영자간의 의사소통, 생산품의 인위적 규격화, 공동행위의 소산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시장상황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카르텔의 입증에 민법상의 계약성립과 같은 의사의 합치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의 제공(사업자간의 회합 등)이 있고 그후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례로 본 부당한 공동행위

명시적 합의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전북 이리 지역 두부제조업체인 태성산

업사와 대풍산업사가 두부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이들 업체는 신고인을 포함한 9인의 도매업자와 두부의 판당 공급가격을 1,6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로 액면 금액 1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후 교부하고, 약속어음 미공증 판매업자에게는 두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동 약정을 즉시 파기할 것을 명하였다.

추정조항 적용사례

첫번째,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10개 유가공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들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주) 등 10개 유가공업체가 원유가격이 평균 13% 인상됨에 따라 1989년 4월 1일부터 백색시유 3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을 위하여 행한 명시적 계약이나 협정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간에 가격인상을 위한 의사의 연락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였다.

① 우선 이들 업체의 경영수지상황이 상이하고, 특히 백색시유 200ml 카톤팩의 경우 이들 업체가 제출한 원가계산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7개사는 그 제조원가가 최고 10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제품별 가격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② 원유가격의 인상내용은 1989년 3월 15일 공식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 중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7개사는 1989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3일간에 가격인

상을 위한 내부기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③ 경쟁관계에 있는 10개의 업체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가격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 동 업체간의 사전협의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들 업체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번째, 대림자동차공업(주) 및 효성기계공업(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들 수 있다.

대림자동차공업(주)와 효성기계공업(주)가 자기가 생산하는 모터사이클제품에 대한 기종·모델별 가격을 인상하면서 125cc 모델 및 50cc 스쿠터모델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두 회사간에 문서에 의한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사전의 의사연락을 바탕으로 가격인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그 의사합치에 의하여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① 우선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두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한 사실이 있었다는 관계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는 바, 동 직원들은 제품에 관한 가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각 회사별 가격인상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실무자들이므로 그 정보가 가격인상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었거나 또한 내부계통을 통하여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예측되며, 이로 미루어 두 회사간에 사전에 가격인상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② 두 회사는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을 북점하고 있고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조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수년간에 걸쳐서도 가격인상을 함

에 있어 관행적으로 경쟁기종인 125cc 모델의 가격을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온 사실이 있고 ③ 한편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인상계획을 확정하고도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유보하고 있다가, 그 기간중에 두 회사의 가격관리업무담당부서 실무자들간에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가 상호교환되었으며, 그후에 효성기계공업(주)가 당초 인상하기로 한 가격을 인하조정하여 시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인상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자들간에 교환된 가격인상에 관한 정보는 두 회사가 자기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수준 및 시행시기를 결정하는데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동으로 가격인상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번째, 5개 철근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들 수 있다.

동국제강 등 5개 철근제조업체가 철근판매가격 및 대금지급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이들 업체는 고철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어음할인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동국제강이 철근가격을 먼저 t당 2,800원씩 인상하고 철근대금의 결제조건을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하자 나머지 업체들도 9일 이내에 동국제강과 같은 내용으로 철근가격을 인상하고 철근대금의 결제조건을 조정하였다.

본건의 경우 이들 업체들은 한결같이 합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철근이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철근가격 및 대금결제조건을 변경하였으나 ① 철근의 품질·규격이 거의 같은 점 ② 1994년말까지 정부의 행정지도로 동일가격이 형성되어 왔던 점 ③ 건설업체는 복수의 철근제조

업체와 거래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측에서 동일한 가격, 결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철근의 가격 및 대금의 결제조건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 및 대금결제조건 변경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그 시행일의 시차가 업체들간에 9일 이내인 점 등 외형적으로 행위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과 ① 피심인의 영업부장들이 거래처에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 사실 ② 선도업체인 동국제강과 동조적 인상업체인 삼표상사, 한보철강공업의 내부품의서에는 대금결제조건 내용이 없는데도, 동국제강에서 대금결제조건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문을 발송하자 2개 업체도 동조적으로 대금결제조건 내용을 추가하여 발송한 사실 ③ 동 업체의 영업부장 5명이 건설회사 자재직협의회 철근분과위원장 소속사인 LG건설을 집단적으로 방문하여 당초의 요구안대로 시행하겠다는 통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건설업체의 세력이 철근업체들의 세력보다 크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결제조건에서는 수요자측의 요청에 반하는 결제조건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은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맡아 통신산업의 진입·성장·퇴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지원국 40명 직원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글 · 전성철 / 객원기자(경향신문 기자)

“스 웨덴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자동차회사 볼보를 통해 선진국으로 평평거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최소 3개 분야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4,600만 국민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한 공무원의 말이다.

그는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방식의 이동전화와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이동전화(IMT-2000)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를 다시 도약대에 올려놓겠다”고 자신했다.

‘민간 자율’·‘작은 정부’ 등이 강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통부 직원들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한밤중에도 청사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눈앞으로 다가온 21세기에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의 재계 판도를 좌우할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말부터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의 개방요구가 거세지고 90년대초 UR협상과 94년부터 시작된 WTO기본통신협상을 거친 이후 정부와 국내 통신업계는 단순히 한반도의 통신시장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계 통신시장을 겨냥하는 쪽으로 방

향을 선회했다. 국내 전화적체 해소에 매달리던 체신부가 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후 정통부는 이동전화의 표준을 CDMA 방식으로 정하고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전체 수출이 662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은 188억 달러로 31.3%나 늘어났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의 무역흑자는 모두 67억6천만달러로 전체 산업의 무역흑자 119억4천만달러의 56.6%를 차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또한 95~98년 동안 연평균 24.2%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타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구조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이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핵심수단이며 신산업과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을 이끄는 정통부의 정보통신지원국은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국내 통신산업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맡아 통신사업의 진입·성장·퇴출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업무영역으로 보면 정보통신지원국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업 지원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지원국 전직원은,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자리잡은 뉴욕증권거래소 건물 정면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통신 이계철 사장이 2층 발코니에서 한국통신 주식의 첫 거래를 알리는 종을 올린 99년 5월 26일을 잊지 못한다. 한국통신 주식 4,510만주를 뉴욕증권거래소에 해외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매각하여 국내 단일기업의 해외 DR 발행 역사상 최대규모인 총 24억9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이다.

정보통신지원국은 국장 밑에 통신기획과·통신업무과·부가통신과 등 3개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상당히 슬림화된 조직이다.

▲통신기획과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와 인수·합병 및 퇴출에 관한 사항, 통신사업 제도,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국가지도통신 및 남·북 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신업무과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업무 등 주로 유선통신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보편

적 서비스 및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등에 관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가통신과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주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신품질 평가, 전기통신번호정책 및 PC통신·인터넷 등 부가통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지원국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김창곤 국장(50).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진화국·통신시설사무소·미국 AT&T 파견근무 등 통신시설의 건설과 운용에 관한 충분한 현장경험과 통신진흥과장·정보통신과장·통신진흥과장·통신기획과장 및 전파방송관리국장 등 통신정책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보통신정책 전문가이다.

기술심의관 시절 CDMA 기술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간파하고 이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아 한국이 CDMA 통신기술 선진국이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97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보통신지원국 3개과 중 수석과장인 류필계 통신기획과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2회로 79년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 통신위성과장·정보통신과장·기술기획과장·정책총괄과장 등 전파·통신정책·기술정책 분야

정보통신지원국은 지난 5월 26일 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사상 최대규모인 한국통신주식 4,510만주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등을 두루 거치면서 상하간에 두터운 신망을 쌓았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로서 특히 정책의 흐름을 읽는 데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신업무과의 강대영 과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3회 출신이다. 서대전우체국장·환예금과장·행정관리담당관·국무총리실 파견근무·방송과장 등을 거쳤으며 금년 미국 증권시장에서 한국통신 DR의 성공적 발행의 숨은 공로자다.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조직내 상하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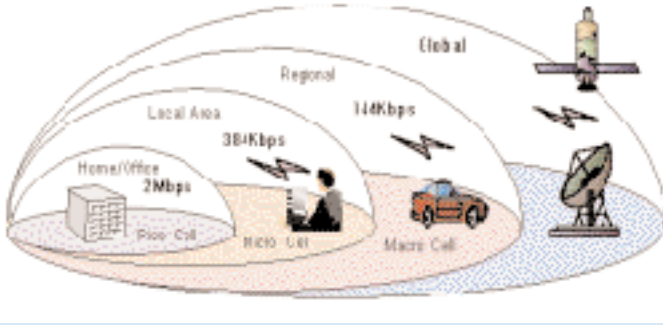
서홍석 부가통신과장.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

학원을 졸업한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정보통신기획과·부가통신과·정보망과·장관비서관·송파우체국장·보험과장을 거쳤다. 최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소방수'로서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틀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통신 품질평가, 지역번호 광역화 등 현안 업무에 능력 발휘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보통신지원국은 지속적으로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왔다. 그 결과 95년 이후 시장규모와 이용자가 급속히 성장, 전화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99년 4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36개사, 별정통신 147개사, 부가통신 1,930개사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99년 8월말 정보

정보통신지원국은 또다른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
내년말로 예정된 '차세대이동전화(IMT-2000)'
사업권 선정이 그것이다.

〈IMT-2000 서비스 범위〉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5,58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94~98년 기간중 연 18.4%씩 성장하여 98년 16조원 시장을 형성했다.

특히 93~98년 사이 소비자 물가가 20% 올라간 반면 통신 요금은 93~97년 사이에 시외전화 60%, 국제전화 50% 정도가 인하돼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이 역시 꾸준히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정보통신지원국은 앞으로 시장 진입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유·무선 통합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서비스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경쟁심화에 따라 나타나는 고비용·저수익 지역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2조7천억원의 판촉비와 단말

기보조금을 쓴 이동전화 5개 업체들의 출혈경쟁을 자제시켜 사회적으로 한 쪽 분야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정보통신지원국은 그러나 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 내년말로 예정된 '차세대이동전화(IMT-2000)' 사업권 선정이 그것이다. IMT-2000이란 세계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음성·영상·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최첨단 이동전화서비스.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 상용화되고 국내에서는 2002년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경제 예측기관들은 IMT-2000과 관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세계에서 1,810억달러의 단말기 및 시스템 시장이 형성되고 2005년 이후 기존 이동전화 시장을 뒤집

어 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IMT-2000서비스는 미래 통신생활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전 산업계와 연결된 사회인프라로 정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21세기 국내 재계 판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처럼 현 정권의 최대 이권 사업이 될 IMT-2000사업권 선정 업무를 정보통신지원국이 맡게 된다. 지난 96년 개인 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후 여러 공무원들이 수모를 당한 경험이 있는터라 요즘 정보통신지원국의 행보는 조심스럽다. 또 최근 정통부는 출연금에 의한 사업권 심사제 외에 가격경쟁을 통한 주파수경매제도를 도입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업자 선정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보통신지원국은 '경매제'라는 카드를 사용해 사업권 심사의 임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내 경제환경에서 경매제는 아직 시기상조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잣대로 중심을 잡아 외부의 흔들기에도 끄떡없이 심사를 해 낼 때 정보통신지원국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닌 분야를 하나 만들어 내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 ■



김진선

강원도지사

대담 김봉익 편집위원

— 道政을 떠나가시는 데 있어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 제가 25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고향인 강원도에서 보내면서, 특히 민선 1기의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면서 미래의 강원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몇 개의 벽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제 그 벽을 허무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첫째가 우리 도민들에게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식과 자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도민통합론’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입니다. 강원도적 가치척도로 보았을 때도 명백한 비교우위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요소의 강원도적 가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세번째는 교통망의 확충입니다. 강원도가 낙후된 것도 바꾸어 말하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망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도내 전지역의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동서 4축 남북 3축’ 교통망의 고속화·광역화에 최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데요, 소위 오랜 세월 동안 강원도를 보는 시각이나 강원도가 갖는 존재적 가치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실례를 들어



물자원 같은 것만 보아도 공급지로서 여러 가지 부담만 있었지 누구로부터도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존중받아야 할 그 '강원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이 강원도의 이익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원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관광'인데요, 오늘날 관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단지 구경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21세기 마지막 남은 산업인데, 여기에 강원도의 21세기의 승부를 걸 각오입니다.

—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로서 그리고 남북한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에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늘 분권적·미시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큰 틀과 원칙은 국가가 짜고 그 틀 안에서 지방·민간 그리고 각 분야별로 통일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남북 관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에는 또다른 '강원도민'이 있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도 만들고 기획단도 만들고 연구센터도 만들어서 농업·관광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민간인 교류를 넓혀 가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아지면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 '변화의 새 바람 강원도 세상'이라는 구호 아래 '강원도 가치론·이익론·쫓대론'을 주창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원도 세상'은, 한마디로 우리 도민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소망이 농축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0년 세월 동안, 강원도가 어떻게 지내왔고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지리적·지형적으로 변방이었고 험한 지역이었죠. 또한 청정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각종 중복된 규제만 가져왔고, 경제개발도 상대적으로 뒤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멍에고 굴레고 족쇄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을 앞두고 강원도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청정환경의 보존지', '신동해권의 중심지', '통일한국의 1번지', 관광과 첨단 지식산업 중심의 '신산업의 요충지'로 부상되고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이제 진정 '강원도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고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고, '강원도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원도를 '한국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목표 아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관광' 하면 역시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옛부터 풍광이 아름답기는 강원도가 제일이라 했고, 오늘날에도 연간 4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관광을 '21세기의 승부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개최되고 있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우리들의 그 같은 희망을 담은 그릇이요, 그 꿈이 펼쳐지는 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망구축 등 관광인프라의 확충, 창조형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자원의 품질향상, 국내외 주요시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마케팅이 그것입니다.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우리나라 관광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을 주제로 엑스포다운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5만여명의 관광객이 엑스포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엑스포는 우선, 우리 강원관광은 물론 한국관광 중흥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이번 관광엑스포를 통해 부가가치도 높이고 투자도 촉진하고 이미지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21세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소망을 담아 열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제26회 관광진흥축진대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 9월 28일 이곳 국제관광엑스포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셨고 대회 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관광관이 있는 국제3관도 둘러보시는 등 각별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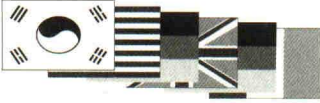
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특히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 저도 직업관료 출신이고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방자치제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는 점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겠습니다만, 권한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에서 지자체가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지자체의 현실이나 의사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배분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도 주어야 할 건 확실하게 주고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할 것인가를 종합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무역과 경쟁정책

— 뉴라운드 협상 관련 동향과 전망

경쟁정책이란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반 정책 수단과 법체계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국내규제 영역에 속하였던 이 분야가 국제통상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세계경제의 통합수준과 기업활동 영역의 범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제도와 정책·관행이 시장접근 차원에서 점차 중요함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태열
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다. 소위 '시장의 국제적 경합성' (international contestability of markets)을 증진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이슈들이 이러한 논의의 대상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UR 협상의 결과 공적인 국경장벽이 대폭 제거됨에 따라 기업의 반경쟁적 영업관행에서 비롯된 사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자유화의 대상도 국경장벽 제거에서 시장내의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TRIMs), 반덤핑, 보조금 협정 등 일부 협정에 경쟁정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정부조치를 규제대상으로 한 규범들이며,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와 영업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들은 아니다. 좁은 뜻에서의 경쟁정책은 후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다자경쟁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48년 하

다자경쟁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 활발

가격 및 입찰 담합, 시장 분할, 독·과점과 같은 시장내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기업의 반경쟁적 영업관행과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제 등이 모두 경쟁정책의 영역에 속하면서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이

바나헌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효과적인 다자규범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1980년에 UNCTAD가 '제한적 영업관행 통제에 관한 원칙 및 규칙' (소위 SET로 통칭)을 마련하였고 OECD에서도 1998년에 '경성카르텔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다자규범 측면에서의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닌 지침이나 권고안 성격에 머무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자경쟁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다자규범은 결국 오랜 다자협상 경험과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갖고 있는 WTO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협상을 통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6년 12월에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의 준비단계에서 EC 등의 주도로 경쟁정책에 대한 WTO 차원에서의 최초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각료선언에 의해 설치된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WTO 작업반' (이하 '경쟁정책 작업반')은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 결실이다.

경쟁정책 작업반은 협상기구가 아닌 교육적 성격의 2년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지난해 말 작업시한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9차 회의를 통해 무역과 경쟁정책 원칙의 상호관계, 반경쟁적 기업관행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투자와 경쟁정책의 상호관계 및 무역정책이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여 왔다.

금년 9월 중순으로 예정된 10차 작업반 회의에서

WTO 경쟁정책 작업반은 협상기구가 아닌 교육적 성격의 2년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지난해 말 작업시한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9차 회의를 통해 무역과 경쟁정책 원칙의 상호관계, 반경쟁적 기업관행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투자와 경쟁정책의 상호관계 및 무역정책이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여 왔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WTO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쟁정책을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각국의 입장차이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뉴라운드 협상의 범위와 협상방식, 일정 등을 논의중인 WTO 일반이사회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시애틀 각료회의에 임박해서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EC·일본·캐나다 등과 함께 다자규범 도입에 적극적 입장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 문제에 대하여는 경쟁법을 단일규범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 EC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C는 각국이 경쟁법규 도입 등 국내제도를 정비할 것을 약속하고, 경쟁정책의 핵심원칙과 규칙을 확립하며,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다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WTO 협상을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캐나다·스위스·멕시코 및 헝가리 등 중·동구권 국가(CEFTA 회원국)들이 이러한 EC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뉴라운드 경쟁정책 협상과 관련하여 EC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제안서를 지난 7월말 일반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일찍부터 경쟁법과 정책을 도입·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다자경쟁규범이 제

정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재 국내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과 구조조정 정책목표에도 부합하며,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개혁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뉴라운드가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많은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이 되어야 하며, 협상 방식도 협상 분야간 흥정(trade-off)이 가능한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등 우리가 수세적 입장에 처해 있는 여타 분야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쟁정책·투자·정부조달 투명성 등 소위 뉴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은 현 시점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규범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경쟁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WTO 차원에서의 경쟁정책 협상이 자칫 반덤핑 이슈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상무부·USTR 등 국내 관련 부처의 상이한 입장과 영역 다툼도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로서는 경쟁정책에 관한 주도권을 무역정책 담당자들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고, 상무부는 미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를 적극 지지하여야 할 입장이나 또 한편으로는 경쟁정책 논의가 미국의 반덤핑 제도를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USTR은 시장접근 개선 차원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WTO 협상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어 아직 행정부내 공식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WTO 경쟁정책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반면, 현재의 양자 및 지역 협력 체제가 상

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입장에 대하여는 주로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과 아직 경쟁법 및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동조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도 다국적 기업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고 국내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자규범보다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선진국의 경험 전수 및 기술협력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홍콩·인도·파키스탄·이집트 및 아세안 국가들은 다자경쟁규범 협상에 반대하면서, 그보다는 반덤핑 협정 등 기존 WTO 협정의 경쟁 제한적 요소를 경쟁 지향적으로 개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자경쟁규범 마련되면

우리의 기업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다자경쟁규범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멕시코 등도 이러한 개혁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경쟁 정책에 대한 WTO내 논의가 반덤핑협정 개정 협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위 반덤핑협정 개혁 동조국가들은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규제 조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충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WTO 협정이 기본적으로 정부조치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무역조치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WTO가 정부의 시장 왜곡에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중복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민간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경쟁법과 정책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협정개혁 동

조 국가들은 반덤핑 협정이 생산자 이익에 너무 치중하고 있으므로 경쟁 지향적 개혁을 통해 소비자 이익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은 소비자 후생뿐만 아니라 생산자 잉여도 고려한 전체적 후생 증대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덤핑협정을 경쟁정책과 함께 논의하는 데 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C와 캐나다는 반덤핑협정 개정 문제를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경쟁정책과 반덤핑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경쟁정책 협상을 거부할 구실을 주지 않으면서 가급적 다수의 경쟁정책협상 동조 국가들을 규합하려는 데 근본 의도가 있으나, 최근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WTO 반덤핑 규범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반덤핑협정 개혁 동조국가들 중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경쟁법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나 복수협정이 라면 모르되 다자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에는 이들 국가 특유의 기업주 중심 소유권 구조와 경영행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기업환경에 있는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도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인도·파키스탄·이집트 등이 다자경쟁규범 협상

WTO 경쟁정책 협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규범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분쟁해결 제도가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합의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업관행,
특히 재벌의 기업행태와 관련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경쟁정책 그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뉴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협상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비롯된 협상 전략 측면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경쟁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두어 달 동안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작업을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최종순간에 여하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각료회의 준비작업의 진전추이를 관망하면서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반대입장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관측도 있으므로 USTR이 점차 내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보다 커지리라 생각된다. 미국이 차기 각료회의 주최국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도 미국의 향후 태도를 전향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경쟁정책에 관한 WTO 협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규범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분쟁해결 제도가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합의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업관행, 특히 재벌의 기업행태와 관련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협상전략의 측면에서는 경쟁정책을 포함한 뉴 이슈에 관한 협상에 적극적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무역자유화 노력과 개혁의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이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을 농업·반덤핑협정 등 여타 주요 관심분야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과 杞憂



한현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세계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춘추 전국시대 杞나라 사람은 행여 땅이 꺼질까 봐 조심스럽게 땅을 밟고 다녔고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 손으로 하늘을 받치고 다녔다고 한다.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우선 지난 30년간 유일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왔던 대표적인 정부시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과감하게 변경되어도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과 상실감이다. 또 하나는 정부를 그것도 건설교통부를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었으니 이제 온 국토를 망쳐놓을

작정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다. 또 어떤 이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40%나 풀려서 분당이나 잠실과 같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도권은 그야말로 불 보듯 뻔하게 교통지옥·환경지옥이 될 것이라고 혀를 차기도 한다.

이러한 걱정의 소리를 들으면서 필자는 혹시 우리가 杞나라 사람이 걱정하듯이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이나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쯤인데 당시에 커피값과 짜장면값을 자율화시킨다는 정부방침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다. 국민들의 필수품인 커피와 짜장면 값이 가격 자율화로 올라가면 옷값 오르지, 신발값 오르지, 학교등록금 오르지...,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나라살림이 어수선해진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랬을까?

이러한 杞憂는 우리 생활과 너무 친숙해져 있던 통행금지 해제 때도 나왔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서울의 밤은 온통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걱정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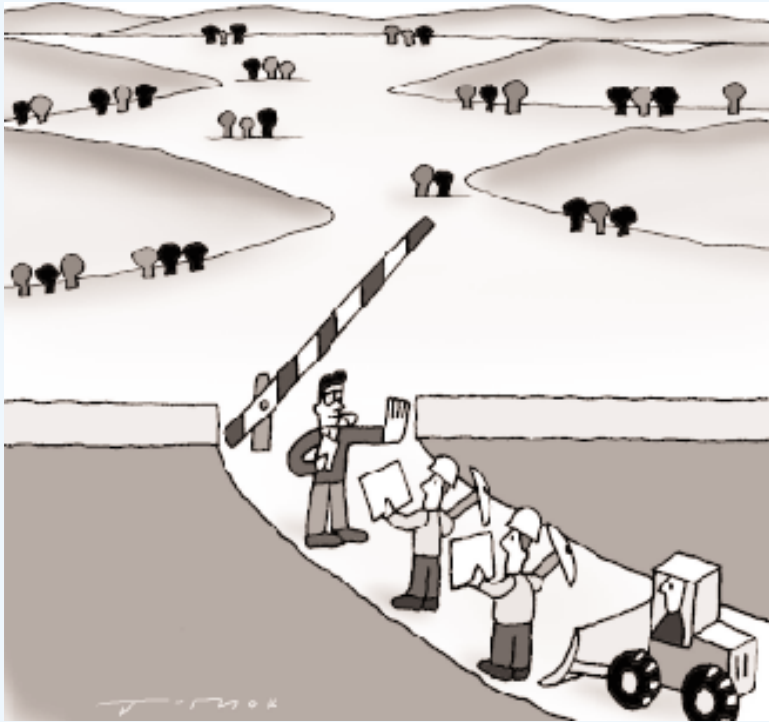
때도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은 30년 전에 도시의 '무질서' 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그 덕분에 도시가 나름대로 질서 있게 발전했다. 만일 서울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서울의 강남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집약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의 강남은 90년대 들어오면서 집이든 휴식공간이든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수서동·우면동의 그 아까운 녹지도 값아 먹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개발제한구역을 뛰어 넘어 분당과 일산마저 개발하게 되었다.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이란 옷을 입었던 소년이 이제 성년이 되어 키도 크고 살이 쪼으니 옷도 새로 갈아 입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해제될 개발제한구역에 분당이나 잠실과 같은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판자촌과 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현재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면



적은 대략 15억평이다. 이 중 수도권에 약 5억평이 있고 이 가운데 40%가 해제대상에 속한다. 만일 해제대상 토지가 모두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된다고 가정하고 이곳에 분당 같은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는 몇 채가 세워질 것이며 이곳에 모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살게 될까?

간단히 계산해 보자. 분당은 500만평에 10만채의 아파트가 들어서 대략 50만명이 살고 있다. 수도권에서 해제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약 2억평(5억평×40%)이고 이것은 분당 신도시 면적의 40배이다. 그러면 400만채의 아파

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곳에는 약 2천만명이 살게 된다.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나가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모두 불러들이거나 북한 동포들을 모두 불러들인다면 몰라도 정부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는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해제할 필요도 없고 분당이나 잠실과 같은 고밀도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단순한 계산으로도 나온다. 수도권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중소도시의 경우는 어떠하

겠는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내려진 정부의 고뇌에 찬결정을 전면백지화하라는 것은 옛 촛나라 사람 들처럼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걱정하는杞憂가 아닐까 한다.

그보다는 좀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언을 정부는 기대한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정성스럽게 가꾸는 마음으로 도시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역사에 부끄럼 없는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를 만들어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제되는 지구별로 개발용도를 정해야 하고 개발밀도나 개발방식도 정해야 한다.

이번에 조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땅은 도시 인근에 남아 있는 마지막 땅이다. 도시의 황폐한 콘크리트 숲에서가 아니라 자연의 숲과 어울린 나즈막한 언덕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21세기 우리의 꿈이 아닌가?

‘杞憂’가 아닌 ‘眞優’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 ■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가경쟁력



박봉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심의관

세계 최대의 실리콘 제조회사인 다우코닝사는 90년대 중반 2000년대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아시아 실리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신규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중국이 제각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치경쟁을 벌였다.

당시 다우코닝사는 투자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장부지 조성상태, 분양가격, 세제 등 지원시책, 에너지가격, 인프라 시설, 인력 수준, 외국어 수준, 기업경영 관행, 노동시장의 유연성, 외국인의 생활환경 등 무려 100여 가지의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결국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밀리고 말았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바보라고 했던가? 외환위기에 대한 반성과 다우코닝사 유치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외국인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지난 1년 반 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제도와 조직에 있어서는 과거 50년에 걸쳐 개선된 것보다 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엄청난 액수의 투자유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외국인은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다우코닝사 유치의 예에서 보듯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그 나라의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상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나라, 기업 및 생활여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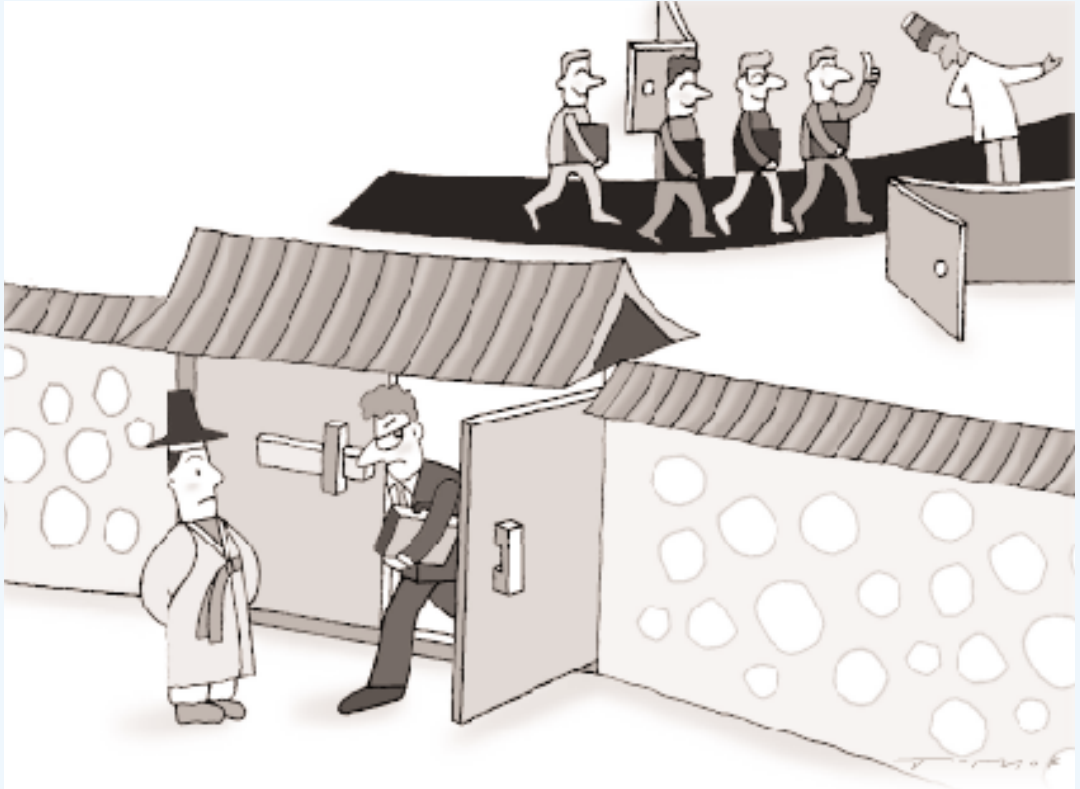
가장 좋은 나라를 투자적지로 선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특정분야의 개혁이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국가 전체의 정치·경제상황, 기업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한 천안과 광주 평등의 외국인 전용단지를 비교해 볼 때, 천안의 경우가 땅값도 비싸고 입주 여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입주 수요가 많다는 사실이 바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1의 요체가 인센티브나 원 스톱 서비스가 아니고 전반적인 기업활동 여건과 생활환경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하나같이 영국정부가 제공한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영국과 우리의 규제 수준의 차이이다. 길가는 사람을 잡아 이유 없이 목을 잔뜩 조이고 있다가 서서히 풀어주면서 내가



네 목을 풀어주니 감사하라고 한다면 고마워하겠는가?

국내기업으로부터는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몇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제의해 보아야 자기 나라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생색을 내며 풀어주는 것이라면 외국투자자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또 추구해야 할 많은 가치와 다양한 정책목표가 있기에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된 경제체제에서 통용되던 사고의 틀

이 개방이 필수인 이 시점에서 도 쉬 깨어지지 않고 있음은 되 돌아보아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수도권 개발억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을 묶음으로써 이들이 자연히 지방에 투자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이들은 지방에 가기보다는 경쟁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서로가 이익을 나누고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것이다. 이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시스템 전체를 선진화·투명화·효율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 부처와 온 국민의 공동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인 것이다. ■

회계의 투명성 강화로 국가신인도 제고

—한국회계연구원 설립



박한균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장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경제의 각 부문에서 새틀짜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 특히 97년말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의 몸체(hardware)는 어느 정도 개혁하고, 나아가 조직의 기능과 구성원의 행동규범(software)을 과감히 혁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2000년대의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혹자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하여는 국가경쟁력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방안으로 투명성의 제고, 인성개발, 정보화, 여성인력의 활용 등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성 가운데서도 회계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외자유치 및 경기회복에 걸림돌

IMF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원인 중 하나로 우

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항상 크게 제기되어 왔다.

경제위기 발생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IBRD 인사나 해외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의한 투명경영체제의 확립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정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외자유치 및 건전한 기업발전을 통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기업 및 금융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요인으로는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반회계기준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종속되어 제정·운용되었다. 그 결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되고, 특히 금융업종의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회계정보의 생산자인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 비자금 조성의 필요성이 상존하였던 우리의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경영자의 고의

적인 회계분식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셋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장치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되었다. 기업 내부의 1차적 감시장치, 외부감사인예 의한 2차적 감시장치,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3차적 감시장치 등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 의한 견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시장치가 효율적으로 구축·운용되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가 기업실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기업회계분식 근절, 회계공시제도의 개선 등 각종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 맞춰 개선하였다. 또한 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조기 도입(당초 2000년 → 1999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경제체제 운영상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기타 기업결합 관련 거래의 회계처리 방법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금융업회계처리 준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중 정책적 고려로 인해 왜곡된 부분과 기타 환경변화에 따라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된 부분을 대폭 개정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보다도 감독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저하되었던 것이다.

독립된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 설립

98년 10월 정부와 IBRD는 구조조정차관 도입조건의 하나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금융감독기구가 주도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제·개정업무 중 상당부분을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민간 주도의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만들어 위탁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대내외의 신인도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따른 것이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이러한 취지하에 정부는 99년 5~6월중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설립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에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표와 회계전문기관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가운데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인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KAI ;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9월 1일에 정식 개원하였다. 회계연구원의 회원으로는 공인회계사회, 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협중앙회, 상장협,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투신협회, 증권거래소, 금감원, 회계학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연구원의 조직은 이사회, 회계기준위원회(KASB ; The Korea Account-

정부는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외자유치 및 건전한 기업발전을 통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기업 및 금융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였다.

ing Standards Board), 조사연구실로 구성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원장 및 상임위원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5인의 비상임위원 등 7인으로 이루어졌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임무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이고,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에 찬성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은 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회계연구원을 겸임하고 조사연구실을 총괄하게 된다.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SEC)가 민간기구인 재무회계

기준위원회(FASB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만드는 회계기준을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번 한국회계연구원의 발족으로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에서 만들어 오던 회계기준 제·개정업무를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상당부분을 민간제정기구로 위탁하게 된다. 이를 법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문식 기업회계 기준을
해설식 준칙으로 개편

앞으로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업 및 금융회계 기준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제·개정되도록 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준정비를 통하여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오는 12월초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국제회계사연맹(IFAC) 및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등과 공동으로 국제회계세미나를 개최하여 회계업무의 국제화 여건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각종 회계준칙과 해석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동 기준 및 준칙 등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회

〈최근의 기업 및 금융회계기준 개선조치 내용〉

개선조치 및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 개정(98년 12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회계처리준칙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회계처리준칙 개정(98년 7월 완료) ·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제정(98년 12월 완료) · 증권업 회계처리준칙 제정(98년 12월 완료) ·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제정(98년 12월 완료) · 통신업 회계처리준칙 제정(99년 3월 완료) · 중금업 회계처리준칙 제정(99년 3월 완료) · 신용금융업 회계처리준칙 제정(99년 6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거래 회계처리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98년 10월 완료)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정(중전 합병회계처리준칙을 포함)(99년 3월 완료) · 연결재무제표 준칙 개정 예정(99년 12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98년 8월 완료) ·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해석(99년 4월 완료)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95개→51개로 정비 및 개정(99년 6월 완료) ·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 제정(99년 6월 완료) ·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제정(99년 6월 완료) ·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제정(99년 7월 완료) ·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제정(99년 9월 완료) ·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개정(99년 10월 완료 예정)

계연구원은 그동안 조문식으로 나열된 기업 회계기준을 30~40개 정도의 준칙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제정하게 되는데, 이용자 중심의 해설식 기준(statement)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나 준칙은 법률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자세한 설명이 미흡하였다. 이때문에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상이한 회계 처리를 할 소지가 있고 규정이 너무 단순화되어 회계실무를 전부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 회계제도 개혁작업 이후 제·개정된 준칙과 해석은 모두 설명식으로 개편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요 항목별로 용어의 정의 및 각종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해설식 준칙으로 개편될 것이다.

또한 한국회계연구원은 회계와 관련된 규정, 자료, 연구결과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회계 관련 국내외의 우수 웹사이트와 연결하는 등 정보제공과 교류의 센터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기업회계 기준 제정과정에서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회계 등 공공회계기준 분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게 될 것이며, 출판·교육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감독업무의 전문화·분업화

앞으로 회계기준 제·개정권이 위탁되면 한국회계연구원은 독립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해석하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이 제·개정하는 회계기준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현실적 수용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적절한 사전감독을 하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기준의 긴급제정권 및 수정보완권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계의 내용이 분식되거나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사후감독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회계기준을 제·개정하고 감독기관은 감독업

무에 보다 충실하는 등 업무의 전문화·분업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운용의 틀 아래에서 보다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세계를 상대로 하여 경제행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듯이 '회계의 투명성이 국력의 일환'으로 실현되어 서로 신뢰하는 기업문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

한국회계연구원은 독립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해석하게 되며, 금융감독기관에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에 대한 적절한 사전감독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화·분업화는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새 협동조합 이렇게 달라진다



김경규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추진단 서기관

2000년 7월 1일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가 하나가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인삼조합 등은 현행 명칭과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경제사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환골탈퇴한다.

이 같은 협동조합개혁은 농지개혁 이후 우리 농정 5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협동조합개혁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다루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다.

새 협동조합개혁법 공포

산고 끝에 협동조합개혁법이 99년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9월 7일 새 협동조합개혁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됐다. 이 방대한 개혁법안은 총칙 174조 부칙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남은 건 협동조합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0일 농림부 차관과 협동조합 대표, 농업인, 농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국'과 협동조합개혁 실무작업을 위한 '기획단'도 구성돼 개혁작업이 본격적

으로 추진중이다.

협동조합개혁법에 따라 새천년·새농업을 이끌어갈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중앙회 개혁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존 농업·축산업·인삼업 등 품목별로 나뉘져 있던 3개 협동조합조직을 하나로 통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한 것이다. 또 통합중앙회에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부문 등 3개 사업부문별로 대표이사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농·축·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중앙회간 중복기능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협동조합 기틀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부문은 각 부문별로 대표이사 책임경영체로 운영된다. 대표이사는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한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며 임면을 제외한 승진·전보 등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이런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소관업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하게 되는데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하게 된다.

중앙회 통합 · 슬림화로 저비용 · 고효율화되는 협동조합중앙회

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는 앞으로 제정될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된 자를 중앙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 소관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이처럼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추천권을 조합장대표자회의에 부여한 것은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밖에 축협중앙회로부터 통합중앙회가 승계한 재산관리를 축산대표이사가 맡도록 한 것이나 중앙회의 잉여인력을 조정할 때 기존 중앙회별로 동일비율로 적용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회장은 기존 중앙회장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과는 달리 각종 사업에서 손을 떼고 지도 · 홍보 · 교육 등 비사업부문의 업무에만 전념토록 했다.

이는 중앙회장이 사업에 연연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권익대변 기능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농업경제 · 축산경제 및 신용부문 대표이사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에 중앙회장은 조정권을 행사해 중앙회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현행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입후보 자격 조건은 현행 조합원 신분 2년 이상 보유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대폭 강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새 개혁법에서는 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농림부 장관이 수행하지만,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 부문에 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이 인정된다. 이는 중앙회 신용사업이 규모에 비해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 기준

이 미흡하고 정부의 지도 · 감독도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중앙회 개혁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하여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를 2년 이내에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장관은 정부, 협동조합 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법 공포후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법에 의무화했다.

한편 새로운 법에서는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회원조합의 예금자에 대한 안전망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의결권은 없고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한다.

결국 협동조합 중앙회 개혁은 농 · 축 · 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중앙회의 방만한 조직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저비용 · 고효율의 조직체로 슬림화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다각도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다.

다음으로 경제 · 유통사업 중심의 일선조합 개혁내용이다.

그동안 일선조합은 협동조합 본연의 경제 · 지도사업을 외면한 채 '돈장사에만 치중하는 조합'이라는 항간의 비난을 거세게 받아 왔

협동조합중앙회 개혁은
농 · 축 · 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중앙회의 방만한
조직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저비용 · 고효율의 조직체로
슬림화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다각도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다.

다. 따라서 이번 일선조합의 개혁은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육성하는데 그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선조합은 경제·유통 사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

새 개혁법에는 일선조합 육성에 대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우선 조합 자율적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통합에 따른 절감재원과 정부재정자금을 단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조합당 30~50억 내외의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중앙회가 경영하고 있던 하나로마트, 물류센터, 사료공장, 육가공공장 등도 일선조합으로 이관되거나 공동경영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품목별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어 각종 경영상담 등의 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개혁법안 제6조에 잘 나타나 있다.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원의 지원과 육성을 중앙회의 책무로 규정, 중앙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 중앙회는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출자사업의 이익금은 공동출자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토록 했다. 회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동시에 회원조합은 중앙회에 우선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개혁법은 조합경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도 크게 확대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조합 운영평가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회에 조합원들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인정하였다. 또 조합의 운영상황과 경영상태도 완전히 공개하고, 회계장부와 서류 등도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에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도 규정했다.

조합장 선출은 직선제, 간선제 그리고 호선제 가운데 조합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상임 또는 비상임 여부를 명확히 하여 그 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비상임 조합장직을 선택한 조합은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도록 했다. 상임인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의·중과실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과실까지도 조합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품목별 전문조합의 적극 육성도 이번 개혁의 두드러진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역 농·축협과 달리 자율적으로 사업관할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품목별연합회'에도 법인격을 인정하여 그 독자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이번 협동조합개혁의 개혁성을 잘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예로 평가되고 있다. 이 '품목별연합회'는 5개 이상의 품목별 전문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해서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다양한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개혁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오직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겠다는 원칙만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의견수렴과 보완과정을 거쳐 추

진되어 왔다.

오직 농업인과 일선조합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개혁법 시행과 함께 우리 농업인과 일선조합에 대한 혜택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법 시행으로 농업인과 일선조합에 대한 혜택 클 듯

먼저, 농산물 유통체계가 통합되어 일선조합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달하는 농·축산물 소매유통 시설이 통합되면 협동조합의 시장교섭력과 가격주도력은 더욱 높아지고,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효율성이 높아져 소비지의 편익도 증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로 농업인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어 흑자를 내면 농약·비료·사료 등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고, 상호금리 인하 여력이 생겨 농민들의 금융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통합중앙회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선조합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축산·인삼 농가들은 이를 통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고갈상태에 있는 축산발전기금 외에 비교적 자금의 여유가 있는 농안기금에서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조합운영이 활성화되어 단순한 경제적 차원 외에 종합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협동조합이 보다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협동조합개혁법 공포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정신을 보다 충실하게 실천하고 농업인이 새 천년·새 농업을 주도적으로 열어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은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도 한층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동조합

개혁은 금년말부터 시작되는 WTO 농산물 차기협상과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개혁법안 마련과정에서 농업계의 갈등과 반목을 새 천년의 희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진정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세계 농업환경의 도전 앞에 정부와 새 협동조합 그리고 일선 영농현장에 계신 농업인·축산인 모두가 합심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

개혁법 시행으로
농업인과 일선조합이 받는
혜택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유통체계가 통합되어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조합운영이 활성화되어 종합적인
지역사회 발전에도 보다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



박종록
해양수산부 법무담당관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이하 ‘어업인지원특별법’이라고 약칭)안이 지난 8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7일 공포되었다.

新 한·일 어업협정 발효 직후 특별법 제정을 논의

어업인지원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는 新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이 협정의 체결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82년 채택되고 94년 11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전문과 320개 조문, 그리고 9개의 부속서 등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바다에 관한 국제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바다에 대한 관할권 규정과 심해저 개발 등 미래의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중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3국간의 어업협정체

결의 발단이 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EEZ)의 도입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까지의 수역으로서, 당해 연안국이 그 수역내의 해양자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수역이다. 이 경제수역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의 개발·보전·관리권, 수역의 경제적 이용권 등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 또는 시설·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권, 해양과학조사권 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수역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 국제어업질서에 커다란 변혁이 초래되었는바 과거에 공해로 인정받았던 수역 중 상당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90% 이상이 이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의 대안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연안국간에는 상호간의 경계획정이 중요한 어업문제로 대두되었다.

新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한국과 일본 간에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한 후 30년 이상 동 협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동 협정은 체결 당시 한국 주변수역에서만 공동규제수역을 설

정하고 동 수역에서의 단속방식도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측에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어업기술과 장비가 급진장함에 따라 상황은 크게 역전되었다. 즉, 우리 어선단의 기술향상으로 일본측 근해에서 우리 어선들의 조업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려는 일본측의 움직임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77년 3월 소련과 미국이 200해리 어업보존구역을 선포함에 따라 북태평양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단이 그 조업구역을 일본 북해도 주변수역으로 변경하게 되어 일본 어민들이 이에 격렬히 반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해도 주변과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각기 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매 3년마다 이러한 조치를 연장하여 왔다.

이러한 한·일 어업협정체제는 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그 개정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고 한국이 96년 1월에, 일본이 96년 6월에 각각 동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96년 8월부터 양국간에 EEZ 경계확정을 위한 실무자회담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한·일간의 EEZ 경계확정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97년 3월부터 EEZ 경계확정협외는 별도로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동해에서 '중간수역'의 설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하는 데는 실패하였는바 일본은 98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라는 초강수를 택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어업자율규제조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간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訪日을 계기로 급진전되었고 마침내 98년 9월 최종 타결되어 양국의 비준절차 등을 거쳐 99년 1

월 22일 新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어업협정체제와 관련하여 양국이 합의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양국의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전통적 어업실적을 감안하여 어획량을 설정하되 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 동안 양국의 어획 할당량이 같게 되도록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99년에는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14만9천t을, 일본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9만4천t을 어획할 수 있도록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상호합의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측 EEZ에서 명태조업은 1999년에 1만5천t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2000년부터는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대게의 경우 2000년까지만 조업을 허용하되 매년 50%씩 감축하여 2001년부터는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로, 동해의 중간수역은 양측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도30분, 서쪽 한계선은 동경 131도40분으로 하였으며 이 안에서의 조업은 기국주의를 적용하여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만 조업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경과후 어느 일방이 협정을 종료시키려면 6개월 이전에 상대방국가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본수역에서의 어

‘어업인지원특별법’ 이 9월 7일 공포되었다. 이 특별법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의 체결로 어장을 상실하거나 어획량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폐업이나 해외 신어장의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국제적인 어업질서 재편과정에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획량은 향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단도 적정수준으로 감축되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야 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 간에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93년 12월 이후 5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결국 98년 11월 이에 가서명하게 되었고 현재 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황해는 그동안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선세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잉어획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어획량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 특별법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의 체결로 어장을 상실하거나 어획량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폐업이나 해외 신어장의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어업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과 장기적인 수산업발전 대책이 핵심

어업인지원특별법은 6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분야와 이에 따른 장기적인 수산업발전대책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에 대하여는 그 선택에 따라 폐업시 어선·어구를 정부에서 매입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타 어장으로 이동 또는 타 업종으로 전환시 못쓰게 된 어구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수역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

척하고자 할 때에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과 출어비용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둘째,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제한으로 어업자가 폐업하게 됨으로써 실직하게 되는 어선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선원이 하선하게 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통상임금 2월분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의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선박소유자와 어선원간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선원은 장기간 해상근무에 종사하여 육상근로로의 전환이 극히 어려우며 고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직업이므로 「석탄산업법」 등 타법의 사례를 감안하여 국가에서 실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셋째, 어업협정에 따른 '잡는 어업'의 위축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수산물가공업, 어망제조업, 어선 수리·조선업 등 관련산업분야에 대하여는 특별용자를 실시하는 등 간접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수산업에 대한 관련산업의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보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WTO보조금협정 등과 관련하여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어업자, 어선원 및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및 관련 시·도에 각각 어업인지원심의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지원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수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 수산관련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둘째,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하여 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전담하는 기르는 어업센터를 설치하고 기르는 어업자에 대하여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에 대한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내포

이번에 제정된 어업인지원특별법은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근국가와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인 등의 고통을 국가적 차원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업인 등의 어려움은 국제어업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고 그동안 수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식량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도 수산업을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매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근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려는 과정에서도 수산발전기금의 신설을 허용하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셋째,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으로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잡는 어업의 위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나라 인근수역에서의 조업제한에 따라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장의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나 축소된 어장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연안에 수산종묘를 대량으로 방류하는 등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실의에 빠졌던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우리 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정어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

어업인지원특별법은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인 등의 고통을 국가적 차원에서 분담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산업을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며,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으로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 수요관리 정책 방향



홍성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1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UN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향후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AGENDA 21'이 채택되었는데 'AGENDA 21'은 제18장을 담수자원 보호를 위해 할애하고 있다. 그것은 물의 건전한 이용과 통제 없이는 생태계의 기능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활용 가능한 물 자원 양은 630억t으로써, 이를 국민 1인당 활용 가능한 양으로 환산할 경우 1990년 기준으로 1인당 1,470t에 불과하여 한국은 물 자원 빈국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물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해왔다. 그러나 물도 이제는 유한한 재화로 평가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받아 빈발하는 가뭄, 댐 건설 적지 부족 등으로 인해 물 공급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의 물 자원 관리정책도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절수 및 물 자원의 재이용 등 수요관리 부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절수설비의 설치 확대

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절수설비 설치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에너지법과 주법에 의해 신축 및 개축되는 건축물에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의 물 사용기기별로 일정 이하 수량이 토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뉴욕 등 미국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절수설비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절수설비의 의무적 설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절수형기기 인정제도' 등을 통해 민관 주도의 에너지 절약 및 절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 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수도법」을 개정하여 1998년 3월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는 양변기뿐만 아니라 수도꼭지·샤워기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확대된다. 다만,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도 절수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절수설비에 대한 KS 등 표준규격 정비,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절수설비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물 자원의 재이용 촉진

과거에는 물 자원의 재이용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재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 자원을 재이용하는 시설로는 中水道(wastewater reusing system)가 대표적이다. 중수도란 공급된 수도물을 일상 생활이나 생산 활동을 위해 한번 사용한 후 동일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재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수도법」에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1998년 9

월 현재 전국 68개소에 용량 40만t/일 규모로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공 및 계획중인 곳이 4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수도를 설치 가동중인 상업 시설물은 백화점·레저시설·호텔 등이고 공장 시설물은 전기·전자, 제지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시설은 물 소비량이 많을 뿐더러 수도요금 단가도 높아 중수도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수도의 생활용수 대체 가능량을 추정하면 2011년까지 공동주택·빌딩의 50%에

최근 정부의 물자원 관리정책도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절수 및 물자원의 재이용 등 수요관리 부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절수설비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中水道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표 1〉 「수도법」상의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절수설비의 종류	절수설비의 기준	비 고
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대변기	수세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수효과가 있을 것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대변기·소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수형 대변기 1회 사용수량은 9리터 이하일 것. 다만, 씻겨나오는 형 및 씻겨내리는 형의 경우에는 8리터 이하일 것 • 절수형 소변기의 1회 사용수량은 4리터 이하일 것 • 같은 변기로 대·소변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탱크의 정상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소변용이 대변용보다 3리터 이상이 더 남도록 할 것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샤워헤드	사용수압이 1kgf/cm ² 일 경우 1분당 나오는 수량이 10리터 이하일 것	
수도꼭지 (주방용 및 세면용)	호칭 15A인 수도꼭지는 사용 수압이 1kgf/cm ² 일 경우 1분당 나오는 수량이 9.5리터 이하일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호칭 15A인 세면용 수도꼭지는 사용수압이 1kgf/cm ² 일 경우 1분당 나오는 수량이 5리터 이하일 것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하루 약 2백만t의 생활용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중수도 이용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나 최근 중수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업체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도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중수도 설치의 권장(수도법 제11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동법 시행규칙 제4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설정(동규칙 제3조), 중수도 시설의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5조) 등이 있으나 이들 제도만으로는 중수도를 확대 보급하기에 미흡하다.

이에 보다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는 외국 사례, 경제성, 기술적 측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기는 200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수단의 확대,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다양한 중수처리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요금 현실화하고 요금제도 개선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물에 대한 수요도 물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금관리는 수요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계량기를 설치해서 물값을 받는 캐나다 에드몬트시는 캘거리시에 비해 물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하며 영국에서도 계량기를 설치한 결과 물 소비량이 이전보다 10~15% 줄었다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고르시에서도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값을 3~4배 올린 결과 10개월 사이에 가정용수 사용량을 30%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1998년말 현재 지방상수도 평균 요금은 347원으로서 생산원가 499원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낮은 수도요금은 상수도 재정 악화를 초래할 뿐더러 물 자원의 비효율적인 소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물값에 사적 재화로서의 올바른 가격신호(price signal)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상수도 공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물값을 조기에 현실화하고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은 값싼 물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물을 원할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요금 수준, 지역별·업종별로 차이가 큰 요금 격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 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금 현실화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A, B, C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율을 점검하

〈표 2〉 생활용수의 중수도 대체 가능량

(단위 : t, %)

	생활용수량	중수도 시설 설치비율	대체가능량
2001년	20,365,927	10	305,489
		50	1,527,445
		100	3,054,889
2006년	23,607,255	10	354,109
		50	1,770,544
		100	3,541,088
2011년	28,879,500	10	433,193
		50	2,165,963
		100	4,331,925

고 있다. 아울러 수도요금의 누진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가구별 평균 사용량 이상의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큰 폭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면 수도요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고 서민의 큰 부담 없이도 절수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평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별·업종별 요금 격차도 최대한 줄여나 가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 방지

누수는 막대한 시설비, 유지관리비, 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수, 취수, 정수처리된 귀중한 물 자원을 낭비하므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급수 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누수는 취수장에서 급수 전에 이르는 모든 상수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급·배수 관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누수방지 계획도 주로 관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누수율은 1991년 20.2%였으나 매년 약 1% 정도 낮아지고 있어 1997년말 현재 14.8% 수준이다. 1년간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물 자원이 약 8.8억t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4천 4백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06년까지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9%까지 낮추기 위해 2006년까지 총 1조 6천억원(지방비 50%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예방적 누수방지 대책으로서 '상수도시설기준' 등을 통해 배수관로 구성의 블록화, 수도관망 관리의 전산화 등을 유도하고 있다.

IMF 이후 경기 침체의 영향 및 정부의 지속적인 수요 관리 정책에 힘입어 다행히 최근

1인당 급수량이 다소 정체하고 있다. 1998년말 기준 1인당 급수량은 391리터로서 1997년말의 409리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 없이는 근래의 회복되는 경기에 편승하여 물 소비가 과거와 같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물 소비량은 프랑스나 독일·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1.2~1.5배에 이른다. 과거와 같은 물 수요 증가 추세라면 향후 2006년까지 추가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에만 12조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월댐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에서 보듯이 더 이상 댐을 건설하여 부족한 물 자원을 공급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는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서 물 절약 생활 방식을 적극 확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는 절수기기 설치와 중수도 활용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누수율 저감을 위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민간 부분은 물 절약 생활 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물 절약형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 물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물 수요 관리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정부는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요금의 누진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평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별·업종별 요금 격차도 최대한 줄여나 가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 3〉 세계 주요 도시의 누수율

(단위 : %)

서울	도쿄	파리	싱가포르	베를린
14.1	8.9	9.6	6.4	5.0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추진



고광섭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

현 대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활용도가 높아진 반면, 이에 비례하여 다양성 및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한 위험과 비용이 증가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문제가 최근 크게 나타나고 있다.

품질·납기·비용을 충족한 프로젝트 비율은 16.2%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개발비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한 조사결과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는 실제 실행해 보기 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기 힘들어, 이를 보장하는 문제는 유형의 제품에 비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품질이 보장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최근 EU의 한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중요성 및 소비자들의 공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은 경쟁력 확보의 필수요소

산업체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

은 경쟁력 확보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는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품질보증 활동을 통하여 제품 출시 후에 고객 불만 및 결함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유지·보수와 관련한 총경비(overhead)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특성 때문에 업체의 자발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과 별도로 제3자가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고 평가한 후에 인증서를 교부하여 품질을 보장해 주는 품질인증 제도는 소비자에게 더욱 필요하다. 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으면 소비자가 이를 믿고 구매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업체의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품질인증 획득 요구에 미리 대응할 수 있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품질인증체계 구축과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선진국의 인증 획득 요구 등 비관세 장벽의 강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개발능력이 있는 업체와 우수 제품을 확보한 업체를 발굴하여 벤처계

피털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함으로써, 구매자의 개별적인 시험·평가가 필요없게 되어 품질로 인한 분쟁시에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해진다.

국내업체, 개발 생산성은 있으나 품질 자체 및 보증조직 등은 미흡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노력은 민간 및 국가 차원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약 62%의 산업체가 품질보증 조직을 활용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에 투입되는 노력도 전체 개발 노력의 50%에 달하고 있다(제2차 Worldwide IT Benchmark 자료). 또한 국가와 대규모 발주자를 중심으로 품질 요구사항을 표준으로 제공하여 산업체의 품질 향상 노력을 유도·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인증은 제품 자체보다는 프로세스 인증쪽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로세스 인증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정확하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품질시스템 인증(ISO 9000 인증)'과 '개발능력평가 시스템'을 통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주로 공산품의 품질 인증에 적용되는 'ISO 9000 인증'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발능력평가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발주시 개발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개념으로서, 현재 이를 위한 국제표준도 제정중에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제품에 대한 확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제품 그 자체의 품질을 보증하여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품인증을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종류 및 그 응용분야가 너무 다양한 관계로 아직

완전한 품질인증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인증시스템이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즉, 독일과 영국이 국가 차원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기타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국가적인 제품 인증시스템은 없으나 개방시스템상호접속(OSI)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적합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 인증시스템 관련기관 현황은, 인정기관 산하에 다수의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기관도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기관은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증기관·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국가표준화기구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 산하 표준개발기관은 민간추진이 어려운 표준화 및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표준기술원(NIST), 영국표준원(BSI), 프랑스표준협회(AFNOR)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는 품질보증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개발 생산성은 해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품질 자체 및 품질 보증 조직 그리고 관련 도구의 활용 측면에서 선진국들보다 매우 뒤쳐져 있다.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프로세스 인증을 위해 품질시스템(ISO 9000) 인증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프로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추진 대책'을 세워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우선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기술을 개발하며, 품질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품질향상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을 양성하는 데 두고 있다.



세스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능력평가 시스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용으로 일부 적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품 인증 관련 국내 기반 열악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의 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시험인증체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기반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민간차원의 소프트웨어 시험인증기관 또한 아직 전무하여 일부 업체는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외국 시험기관의 시험인증을 획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품질 평가와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국가규격이 부족하고,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의 고품질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품질 문제를 기인 요소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업체의 품질향상 노력이 부족하여 저품질 소프트웨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품질과 실제 제품의 성능 차이가 커서 소비자가 이를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발주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발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경우가 있어 개발 후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둘째, 업체의 품질향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증과 관련한 제도적·환경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즉, 국가적인 품질인증시스템 구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정이 없으며, 분야별로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고 평가할 시험 전문기관과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 소프트웨어 인증체계 부재로 인하여 업체의 인증요구를 수용치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업체는 신뢰성을 입증할 방법으로 인증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시험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수출경쟁력에서 뒤지게 되어 부득이하게 외국 기관의 인증을 취득하기도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술의 부족이다. 산업체는 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시

협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확보된 기술이 없어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시험평가 기술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이를 적용분야별로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 시험인증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표준화 활동이 미흡하여 소프트웨어 기능 표준과 시험표준이 양적·질적인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표준은 200여건 정도로 ISO 국제표준 400여건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능표준·시험규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체계,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규격 등은 거의 없다. 또한 업체의 투자 여력 부족으로 선행기술 선점을 위한 사실(de facto) 표준화 활동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참여도 매우 부족하다.

품질인증 사업의 연내 추진 등 종합대책 수립

위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추진 대책'을 세워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품질향상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을 양성하려는 노력으로 구분된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인증 사업을 연내 추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사업은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식 인증을 부여하여 내수 시장 확보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업체 및 우수제품의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적인 품질인증 사업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평가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인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관련 평가 기준·인증 절차·운영규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인증 유형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여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인증 유형 또한 보다 진화된 개념으로 확대할 것이며, 인증유형별 평가대상 소프트웨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품질인증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객관적으로 시험·인증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주요 개발 대상 기반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에는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 기준 및 지침,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법과 지원도구가 포함된다.

둘째, 소프트웨어 선도기술 표준을 개발한다. 핵심 소프트웨어 분야를 정하고 구체적인 기능 표준안 및 시험 규격·지침을 개발하여 개발된 표준을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활용토록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추진 대책’으로 향후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국내기술로 대체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며, 산업체의 품질보증 능력의 제고와 함께 높은 신뢰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시험평가 모듈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산업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사례 및 시험평가 모듈을 축적하여 공용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품질향상 지원 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산업체의 자발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으로서 인증 유형별 인증시스템 수립 관련 제도 및 운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활동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화를 위한 법령·규정·지침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절차 및 운영 규정을 준비하여 품질 인증을 위한 토대 구축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경우, 적합한 개발능력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수발주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및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기준'의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시험기관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품질인증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형에 맞는 민간 기관 중심의 특화된 시험기관 및 품질인증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시험기관 육성 측면에서는 우선 시험기관의 설립 및 인정요건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험기관을 확대·지정하여, 소프트웨어 유형별로 특화된 민간 중심의 시험기관을 육성·지원해 나갈 것이다. 품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품질인증 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기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시험전문가 양성 과정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시험 전문가 자격시험을 제도화하고 품질인증 심사원의 등록제를 시행하여 인력의 조기 양성에 앞장설 것이다.

수출경쟁력 제고,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

이상과 같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추진대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산업·기술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체의 품질향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증대되어, 향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국내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체계 구축으로 유통시장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공제사업·기술담보제도·벤처 캐피탈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정책의 기반구조로 활용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표준 및 기술의 보급으로 산업체 품질보증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개발된 시험기술을 업체에 제공하여 업체로 하여금 높은 신뢰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러한 대책의 핵심 내용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및 인증을 통해 업체의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공동 노력을 유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기반을 정비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이다. ■

21세기 항공안전 강화 방안



이우종
건설교통부 항공안전과장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세계항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새 천년을 맞는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과 민간항공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태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 아·태지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겠다.

항공사의 안전도가 경쟁력의 중요 척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있다. 바로 '항공안전'의 확보이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은 80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10위권 항공운송국가로 성장하였지만, 최근까지도 잇따른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

지난 10년(89~98년) 동안 총 8건의 항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하여 376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 보호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임을 살펴볼 때, 항공 안전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운항하는 타국 항공기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국가간 항공협정에 없었던 안전(safety) 조항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는 98년 6월 8일 서명, 발효된 한미항공협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최근 미국 항공사와 좌석공유(code-sharing)를 하고 있는 외국항공사들의 안전도를 2년마다 검사하고 기준에 미달시 미군과 그 가족의 탑승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항공안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항공사의 경쟁력이 단순한 마케팅 능력 등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항공사의 안전도가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Star Alliance 등 전략적 제휴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항공사도 향후 외국 대형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

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적항공사의 세계적 수준의 안전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항공안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하고 항공산업 진흥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지난 7월 조종·운항, 관제·공역관리,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주요 5개 분야의 항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숙련된 조종사 확보

먼저, 지난 10년간의 항공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87.5%)이 조종사 과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숙련된 조종사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승진·임용자격을 현재의 비행경력 3천시간에서 4천시간으로, 부조종사 경력을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하

였다. 아울러 모든 조종사는 소형·중형기를 조종한 다음 대형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기종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후 기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조종사의 과로를 방지하여 안전운항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편승시간을 포함 최대 180시간 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월 승무시간을 12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항공기 정비관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

두번째, 항공기 안전성 제고에 필요한 항공기 정비 및 검사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국적항공사가 보유중인 기종을 단순화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적정 예비부품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공사에 대하여는 정시점검 주기를 연장(30% 범위 내)하는 등 항공기 정비관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비는 항공사에서 하되 이에 대한 확인 검사는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검사체제로

〈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현황

	참여 항공사	특 징
Star Alliance	Air Canada, Air New Zealand, ANA, Ansett, Lufthansa, SAS, Thai, United, Varig, Mexicana (10개)	최초로 공식 출범한 항공사간 블록으로 스케줄 연계, 공동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의 작업을 수행중
OneWorld	American, British Airways, Canadian, Cathay Pacific, Qantas, LanChile, Finnair, Iberia (8개)	아메리칸항공과 영국항공을 중심으로 코드 공유, 공동 마케팅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Dutch Treat (가칭)	Northwest, KLM, Continental, Alitalia * 추후 Alaska, Air China, JAS 등의 참여가 예상됨.	91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노스웨스트항공과 KLM간 포괄적 code-sharing을 모체로 현재 알리탈리아를 참여시킨 'tripartite alliance'를 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타 지역 항공사를 유치, alliance화할 것으로 예상됨.
Southern Comfort (가칭)	Delta, Air France간 전략적 제휴를 모체로 성정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델타항공 및 불란서항공을 중심으로 다른 항공사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파트너로 대한항공이 유력시됨.

전환하며, 이를 위해 검사인력(15명)을 증원하고 美연 방항공청 등(FAA, ICAO, Boeing)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도 증대할 것이다.

관제사의 사전교육 강화하고 공항의 안전성 제고

세번째, 관제와 공역을 개선하고 민항기 관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하는 관제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거쳐야만 관제사가 될 수 있도록 관제사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군 공항에 민간관제사의 파견을 확대하여 민간항공기 관제업무를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역과 항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 위주로 되어 있는 공역위원회에 항공사·민간 전문가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네번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공사고가 이착륙중 발생(지난 10년간 100%)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군 공항 대부분(16개 중 12개)이 군사 목적 상 야산에 위치하고 있어 이착륙 장애 요소가 상존하고 있었던 것도 사고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항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속초·목포공항 대신 양양·무안에 대체공항을 건설하고, 최종 공항 접근로 상에 위치한 포항·여수공항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공항 활주로 양측의 여유부지를 확충(제주 225m→300m, 여수 85m→300m)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항행안전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지방공항의 계기 착륙시설(사천, 포항, 여수)과 진입등(포항, 여수, 울산)을 보완 설치하고, 낙후한 관제·통신 시설을 2001년까지 대폭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위성항행시스템을 2005년까지 도입·운영하여 항행 안전시설도 첨단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올해보다 약 50% 증가된 3천5백억원을 확보하여 항공

안전을 위해 집중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사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

마지막으로, 항공사에 대한 사전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5명) 제도를 도입하여 조종사 교육훈련 및 심사, 운항통제부문, 항공기 검사·정비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항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안전에 대한 항공사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사고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1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상향조정토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노선확장 등 외형성장보다 안전운항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 및 증편도 불허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항공안전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안전은 항공사고의 전손성(All or Nothing) 등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동안 항공사고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정부의 책임도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은 정부의 대책이나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관·군을 포함하는 항공부문 종사자 모두가 각기 맡은 자리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룩된다고 믿는다. ■

정부가 마련한

항공안전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숙련된 조종사의 확보, 항공기 정비관리방식의 선진국형으로의 개선, 관제사의 사전교육 강화, 대체공항 건설 등 공항의 안전성 제고, 항공사에 대한 사전지도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예산성과금제도란?



강태혁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장

올 해로 나도 연금대상자가 되었다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으니, 공무원 세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나 보다. 그동안 광화문에서 남태령 너머 과천으로 그리고 다시 반포. 이렇듯 근무지가 바뀌었다. 내 자리는 창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내 책상 위에도 펜티엄급 PC가 번듯하게 놓여있다. 부지불식간 나의 주변에도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일하는 모양은 옛날 우리 상사들로부터 듣고 보아 온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자세가 안됐다고 질책하는 것이나, 옛날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힐난하면서 직원들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것은 공무원의 사명감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든 최소한의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든 직원들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지을 것은 아니라도 이제 많은 부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워왔다. 더 이상 사명감이나 애국심에 대한 기대, 또는 일방적인 강요만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시대로 변해버린 것이다.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여 금전적으로 보상

그러면, 행정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무엇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매우 현학적인 이야기같지만, 그것은 조직 구성원의 욕구와 행정조직의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는 만큼 조직목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체제와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길뿐이라고 생각된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용을 절약하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달성에 담보가 될 수 없는 막연한 사명감이나 일방적인 강요에 기대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해낼 수 있도록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노력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인 것이다.

예산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큰 줄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과거사례가 없으면 주저 없이 삭감하고, 유사지출 사례가 있으면 큰 고민 없이 반영하고, 그렇게 하여 당초 예산한 수준의 규모

에 맞추어 예산을 쌓아간다. 정해진 시한에 맞추려다 보면 달리 뽀족한 수도 없다. 사업별 타당성을 일일이 점검하고 따지다 보면 도대체 법정시한 내에 예산서를 짜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이나 생산성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개발수준이 낮아 시장수요가 충분했을 때는 어디든 투자해서 생산만 하면 기본적인 수익이 돌아왔기 때문에 비용이나 생산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투자를 늘려 나왔다.

공무원 세계에서 예산을 쓰는 패턴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벌이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의 평가기준이 되었다. 예산을 절약하는 부서는 일을 안하는 부서로 인식되었고, 심지어는 애써 남긴 예산을 다른 부서에 빼앗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관행들은 재정의 저효율을 가져왔다.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예산은 매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행정인력이나 종이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지 않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들인 고가 장비들이 한구석에서 놓고 있는데, 다른 기관은 유사한 장비를 사겠다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도로나 철도 부설계획을 공고하고 나면 전국의 투기꾼들이 도로나 철도가 지나갈 땅에 가건물을 짓거나 다년생 작물을 심어놓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상비를 받아내고 있다. 전

국에 개발해 놓은 산업단지가 20%나 주인 없이 놓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테크노밸리·첨단단지·과학단지·정보단지 등등 이름을 바꾸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들고 다닌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이러한 재정의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공무원의 사명감이나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막아낼 수 있겠는가? 애써 예산을 아껴 남겨놓아 봐야 자기는 사람만 야박해 보이고 인기만 잃게 되는데, 사명감만으로 자기가 지출하는 정부예산을 자기 돈처럼 아끼고 절약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의식중에 새나가는 낭비나 비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길은 예산절약을 위해 애쓴 만큼 그에 상응하도록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자는 것이 바로 예산성과금제도인 것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욕구와 행정조직의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는 만큼 조직목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일방적인 강요에 기대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해낼 수 있도록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노력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상적 경비는 절약된 예산의 50%를, 주요 사업비는 10%를 성과금으로 지급

예산성과금제도의 기본은 절약된 예산의

〈표 1〉 예산성과금제도 개요

성과금 유형	성과금 규모	사후 조치
정원감축	감축정원의 1년분 인건비	감축정원 해당인건비 삭감
경상적 경비	절약액의 50%	익년도 해당예산 30% 감액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1억원 한도)	잔여절약액 타사업 전용
수입증대	수입증대액의 10%	

일정비율을 성과금 재원으로 하여 당해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기여도에 상응하도록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산을 절약한 규모에 따라 성과금의 규모도 늘어난다. 다만, 예산의 지출유형에 따라 달리 책정하고 있다.

정원감축의 경우에는 감축된 정원의 1년분 인건비를 성과금 재원으로 하고, 각급 행정관서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나 기본사업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절약된 예산의 50%를 성과금 재원으로 한다.

주요사업비의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의 10%를 성과금 재원으로 하지만, 예산명세서상 주요사업비로 분류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경상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비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관서의 요청에 따라 경상적 경비와 같이 절약액의 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예산의 지출비용 유형별로 성과금의 지급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예산지출 항목의 성격상 절약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책정된 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

은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최소 회계단위의 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이처럼, 성과금의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자극하는 한편,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정된 성과금 재원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고, 또 조직단위가 작을수록 응집력이 강하여 예산절약에 단합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개인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예산절약이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인 경우에는 최소회계단위의 조직을 지급 대상으로 하되, 개인별 지급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실질적인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성과금은 국민의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성과금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지급한도액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성과금액의 최고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다. 다만, 예산절약의 내용이 유사한 다른 사

〈표 2〉 98년도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사례

(단위 : 백만원, 명)

	예산절약 내역	절약액	성과금	수혜인원
국 방 부	무기정비예산 절약	983	14	4
교 육 부	학교의 과조직 통합	4	1	1
건 교 부	이주비 지급방식 개선	530	10	6
해 수 부	유류구매제도 개선	1,044	20	5
환 경 부*	청소용역방식의 개선	2	1	13
철 도 청	결원운영, 근무체제 제도 개선	9,957	4,197	29,119
해 경 청	피복지급제도 개선	76	8	4
공 정 위	모니터운영제도 개선	36	4	9
감 사 원	배수관보수비용 절감	6	2	5
합계(9기관)		12,638	4,346	29,166

註 : * 근무체제 제도 개선 관련 절약액은 34억7,300만원, 성과금은 9억5,500만원임.

업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파급됨으로써 예산 절약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하다.

98년에 43억원을 성과금으로 지급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누가 성과금 한 번 타먹고 예산삭감 당하여 매년 고생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과잉인력이라 하여 기구나 자리를 감축하는 것은 하위직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그만큼 불이익이 된다.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면 다음해부터는 절약한 금액의 30%가 줄어든다. 지출소요가 일시 줄었다 하여 이를 삭감해 놓고 나면, 새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수월한 일인가? 그러니 성과금 얼마 타먹고 두고두고 고생하기 싫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소간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겠지만, 사실상 일이 없는 자리를 단지 인사 솜통을 트기 위한 목적으로 존치하게 한다든지, 꼭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닌데 예산이 있다 하여 낭비하는 것은 공직자 양심에, 최소한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내역을 한번 들여다보면 결코 이처럼 여유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낄 부분을 아끼지 않고 낭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집단이기주의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산을 절약하였다 하여 곧바로 다음해 예산에서 절약한 금액만큼 모두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 경상적 경비는 다음해 예산에도 절약한 금액의 70%가 다시 반영되는 것이고, 주요사업비의 경우에는 절약하여 불필요한 예산만큼 다른 사업비에 전환되거나 감액 반영하는 것 뿐이다. 특히, 정원감축의 경우에는 감축된 정원의 1년분 인건비를 성과금

으로 지급하는 한편, 절약된 인건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관이 희망하는 숙원사업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결국, 꼭 해야 할 일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98년부터 시행되어 이미 철도청 등 9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43억 원을 성과금으로 지급받은 바 있다. 철도청은 공무원의 근무시스템을 바꾸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용 유류의 구매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였고, 건설교통부는 공항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주거 이주비의 보상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였다.

이처럼, 성과금이 지급된 예산절약의 사례들을 눈여겨보면 사실 어느 부서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들이다. 다만, 그것이 사실상의 예산절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공무원 개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예산성과금제도는 98년부터 시행되어 이미 철도청 등 9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43억원을 성과금으로 지급받은 바 있다. 철도청은 공무원의 근무시스템을 바꾸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약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용 유류의 구매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였다.

근무체제 개선으로 예산절약

조진규

철도청 후생복지담당관

정부는 99년 8월 '예산성과금 규정'을 제정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를 계기로 이번 號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절약
성공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해로 창설 100주년을 맞는 우리 철도는 그동안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의 동맥임을 자부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송분담률과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즉, 오랫동안 유지해 온 관료적 운영 형태를 기업적 형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철도경영 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98년 3월 정부의 공무원봉급 10% 반납 조치에 따라 철도청 현업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현업근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였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근무체제 개선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현업소속의 대다수 직원이 관련되는 1주야 교대근무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근무체제 바꾸어 근무여건 개선하고 예산도 절약

철도는 24시간 밤낮 구분 없이 열차를 운

행해야 하는 업무상 특성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체제 또한 다양하다.

△일반부처 직원들과 같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일근(1일 8시간 근무) △일근체제보다 일정시간을 더 근무하는 특수일근(1일 13시간 내외 근무) △열차의 운행시간표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기관사·여객전무·차장 등 열차승무원의 승무교번 근무체제 △24시간 근무하고 익일 24시간 휴무하는 1주야 교대근무 체제가 있다.

이 중에서 1주야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는 밤낮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전국 각 역에 근무하는 역무분야와 열차를 정비하고 시설을 보수 점검하는 현업분야로서 철도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3만3천여명의 철도청 직원 중 47%에 달하는 1만5,500여명이 1주야 교대근무 체제로 근무하고 있다.

1주야 교대근무 체제는 3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 등 다른 근무체제보다 인원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

는 주간 업무량과 야간 업무량이 불균형하며, 야간의 이례적인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기성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업무량의 변동에 따른 직원의 신속적인 배치가 곤란하여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매일 고정적으로 인원이 배치되는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24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근무체제를 관리하는 후생복지담당관이 총괄하고 보수제도담당사무관을 실무팀장으로 하는 '1주야 근무체제 개선팀'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행 근무체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제도담당을 포함한 2개의 현황 파악팀을 구성하여 약 20일간에 걸쳐 5개 지방철도청 및 철도차량정비본부 등 전국 현업소속을 방문 조사하였다. 근무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현업직원들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각 지방철도청 및 철도차량정비본부의 주관 국·과장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철도청과 업무가 유사한 서울시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타기관의 근무체제를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① 1주야 단축근무안 ② 1주야 교대근무 체제를 3조2교대 근무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안 ③ 1주야 교대근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 등 3개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1주야 단축교대근무 방안은 출퇴근시차제, 조기퇴근제 등의 형태로 근무교대시 여유시

간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2시간 정도 근무를 단축하는 체제이며, 3조2교대는 근무조를 주간조·야간조·비번조의 3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을 순환근무하는 체제로 현재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일부에서 운용되고 있다.

먼저 단축근무 방안과 3조2교대 근무 방안을 검토한 결과 업무의 인수·인계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잦은 근무교대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저해, 이로 인한 생활 리듬의 파괴는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이 대폭 감소하여 현업 소속 직원과 노조의 반대가 있었다. 특히 3조2교대 근무체제의 경우 많은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선팀에서는 현업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예산(초과근무수당)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묘안이 없을까 하고 많은 고심을 하였는데 1주야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를 업무의 양, 노동강도에 따라 근무실태를 분석하여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1주야 교대근무 분야 중 업무량이 많고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갑종으로, 업무량이 다소 여유가 있고 노동강도 또한 약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을종으로 구분하여 을종 체제의 근무자에게 야간 수면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면 철야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근무조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갑종과 을종은 모두 1일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나 갑종은 심야시간중 4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실동근무시간(근무시간중 휴식 2시간, 수면 4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8시간이지만 을종은 실동근무시간이 1시간 적은 17시간으로 하고 야간 수면시간을 1

시간 연장하면 실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근무자의 피로도 감소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도 대폭 절약되는 효과가 예상되었다. 즉, 수면시간이 1시간 늘어난 만큼 시간외근무시간이 1일 1시간 적게 발생되며 월 15시간, 연간 180시간의 시간외근무가 줄어든다. 갑종 1명을 을종으로 전환하면 기능직 8급을 기준했을 때 1인당 연간 약 6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연 3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거두어 9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철도청은 국가기관이면서도 다른 부처와 달리 현업소속의 기능직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근무체제의 개선과 같이 직원의 근무조건과 보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은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업소속의 근무현황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업무량, 근무여건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철도경영 개선의 불가피성을 들어 노동조합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수면시간 확대에 따른 실동시간 감소로 사실상 보수가 감액되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된다며 반대하였다. 개선안에 대한 노동조합과 협의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져 근무체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근무체제 개선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처 생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개선안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일부 현업소속 직원들로부터 보수를 삭감하려 한다는 항의 전화를 하루에도 여러번 받았다. 더구나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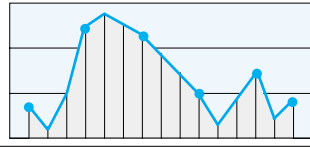
년 3월에는 공무원 봉급 10%가 반납 조치되어 현업직원들은 가계를 꾸려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야별·소속별로 조사한 현업소속의 업무량과 노동강도 등을 토대로 실동근무 시간을 감축하고, 수면시간 확대시 업무수행과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별하여 1주야 교대 갑종근무자 1만5,513명 중 5,430명을 을종으로 전환하여 연간 34억 7,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1주야 교대근무체제 개선으로 절약한 예산의 약 30%인 9억5,500만원은 98년 12월 30일 현업소속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예산절약성과금으로 지급하였다.

어려운 여건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현업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현업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산절약에 대한 전직원의 동참의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철도청은 철도 경영개선을 위한 인원 감축 등으로 현업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1주야 교대 갑종근무체제를 을종으로 전환하는 개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약함은 물론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 『나라경제』 이번 號 경제정책해설 120쪽에 기획예산처 강태혁 제도관리과장이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편집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회복

유광열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서기관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중 90년대 들어 가장 빠른 속도의 경기회복을 보였다. 지난 1/4분기 중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경기회복의 모습이 불안정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2/4분기중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설비투자도 크게 살아나고 수출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되는 등 내실 있는 경기회복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7월 이후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생산·출하·소비·투자 등 산업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부문별 지표나 최근 기업의 경영실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대우문제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경상수지의 흑자지속,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외환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금융시장은 대우사태로 회사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조정국면을 거치고 있으나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호조 및 내수의 회복으로 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다.

실물경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지난 2/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설

비투자 등 내수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도 신장된 데 힘입어 1/4분기(4.6%)보다 높은 9.8%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설비투자가 1/4분기(12.9%)에 이어 2/4분기중에는 무려 37.2% 증가하여 소비주도의 불안정한 경기회복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설비투자의 내역을 보더라도 지난 1/4분기의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했던 운수장비 투자 이외에 1/4분기중 3.8% 증가에 그쳤던 기계류 투자가 무려 32.3% 증가함으로써 설비투자의 구성도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98년중 신용경색,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월되었던 수요(pent-up demand)가 현재화하면서 1/4분기의 6.2%에 이어 2/4분기에는 9.0% 증가하였다. 소비 중에서도 특히 내구재 소비가 40% 이상 증가하여 작년중 미루었던 결혼, 이사, 내구재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경기회복세는 전분기대비 3% 이상으로 나타나 90년대 들어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임으로써 97년말의 외환위기에서 거의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활동수준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97년 상반기 수준을 넘어섰고 민간소비도 96%에 이르렀다. 다만 설비투자는 72%에 불과한데,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과다차입에 의한 과잉투자를 추진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공장가동률이 상승할 경우 설비투자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건설투자는 아직 위축되어 있어 외환위기 이전의 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생산은 7월에도 자동차·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및 반도체, 통신기기 등의 수출신장에 힘입어 3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성장격차도 크게 축소되고 있다.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월중 81.0%로 향상되어 금년 들어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하였다.

도소매판매는 7월중 18.6%가 상승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향후 6개월 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5.0으로 향후에도 소비가 계속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도 7월중 29.4%의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설비투자에 관한 기업실사지수도 앞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건설수주가 크게 회복된 반면 공공부문의 발주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7월중 0.1% 증가에 그쳤다.

생산과 도소매판매는 거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만, 기계 및 건설수주는 아직 외환 위기 이전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7월중 고용사정은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증가에 힘입어 취업자는 전년동월보다 2.4% 증가하고 실업자는 6월보다 7천명 감소한 135만명에 이르렀으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6.2%를 유지하였다. 고용구조를 보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중 90년대 들어 가장 빠른 속도의 경기회복을 보였다. 7월 이후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생산·출하·소비·투자 등 산업활동동향을 나타내는 부문별 지표나 최근 기업의 경영실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상용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증가한 이후 7월에도 6월과 같은 수준인 47.8%를 유지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되고 물가도 대체적으로 안정세

99년 7월중 경상수지는 6월의 24억 6천만달러보다 확대된 28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99년 1~7월중 경상수지흑자는 154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통관수출은 5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어 있는데 환율의 안정세 지속, 세계경기의 회복, 반도체 가격의 상승, 엔화 강세 등 대외경제여건의 호전으로 8월중에는 17.8% 증가하여 8월까지 3%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전자부품·석유화학·자동차 등은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 철강 등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일본·EU·ASEAN·중국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CIS, 대양주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다. 통관수입은 수출 및 생산활동의 증가, 설비투자의 회복세 지속으로 8월중 38.8% 증가하여 8월까지 20.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8월중 수출입차는 154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8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전월대비 1.0%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대비로는 0.9% 상승하여 지난 5월 이후 물가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가격은 시중유동성이 풍부하고,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올초 이후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2/4분기중 전국의 지가변동률은 전기대비 0.84% 상승하여 1/4분기(0.35% 증가)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월중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월말대비 각각 2.4%, 11.2% 상승하여 97년말 대비 89.8%, 90.7% 수준에 이르렀다.

환율은 안정세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

8월중 원/달러 환율은 대내적으로는 대우문제, 대외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긴장 등으로 1,200원 내외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무디스사의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 검토, 엔화 강세 등에 힘입어 9월초 현재 1,190원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용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8월말 현재 648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8월중 콜금리는 4.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신사가 환매자금조달을 위하여 보유채권을 일부 매각함에 따라 장기시장금리가 1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은

전반적인 시중자금 부족보다는 대우사태 이후 투신사의 유동성 부족 우려 등으로 채권시장이 수급불균형을 보인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도 8월 18일에 869포인트까지 하락하여 연중 최고치를 보였던 7월 9일의 1,028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대우사태에 따른 불안심리, 시장금리의 급상승,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 지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 하순 이후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검토 보도(8월 23일), 상장법인의 반기업 실적 호전 등으로 투자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주가가 회복추세를 보여 9월초 현재 900선까지 회복되었다.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을 포괄하는 M3 기준으로 통화증가율을 보면, 3월중 14.1%까지 상승하였던 통화량은 그동안 M3 증가를 주도해 온 투신사 수신이 크게 감소하면서 6월 중에는 12.7%까지 하락하였으나 시중유동성은 실물경제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사태로 인하여 8월 1~25일중 주식형 수익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은 전월(16조3천억원)보다 크게 둔화된 2조 5천억원 증가에 그쳤고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7월 19일(대

〈표1〉 산업활동 동향 및 실업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98년				99년		
	1/4	2/4	3/4	4/4	1/4분기	2/4	7월
GDP	-3.6	-7.2	-7.1	-5.3	4.6	9.8	-
산업생산	-6.2	12.2	-9.5	0.3	12.5	22.7	33.1
(경공업)	(-15.3)	(-18.1)	(-16.6)	(-12.4)	(-0.1)	9.5	15.5
(중화학)	(-3.6)	(-10.8)	(-7.6)	(-4.3)	(16.6)	27.5	39.7
제조업평균가동률	68.8	67.0	66.7	69.6	71.3	76.8	81.0
재고(기말기준)	-4.6	-8.0	-10.9	-16.8	-18.5	-16.7	-15.2
도소매판매	-11.2	-16.0	-15.1	-8.1	6.0	10.8	18.6
국내기계수주	-38.9	-43.8	-22.2	-5.1	16.9	38.5	29.4
국내건설수주	-23.4	-53.4	-44.8	-35.7	-45.3	27.5	0.1
실업률	5.6	6.8	7.4	7.4	8.4	6.6	6.2

우그룹 구조조정 발표일) 이후 8월말까지 약 26조원이 빠져 나갔으며 MMDA(수시입출금식 예금)와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등 은행예금은 8월중 약 14조원 증가하는 등 금융권간에 자금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외환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금융시장은 대우사태로 인하여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조정국면을 거치고 있으나 연화강세로 인한 수출호조 및 내수의 회복으로 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하반기 들어서도 실물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경기 호전, 연화강세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도 유가상승,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중에는 총수요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우의 구조조정 및 투신사의 유동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므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식시장도 엔고·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기업의 실적개선도 현재 할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우를 비롯한 대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전여부,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미국의 추가적 금리인상 등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원활한 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노력과 범국민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2〉 물가 및 부동산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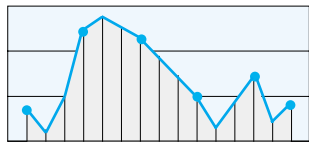
(단위: %)

	97년	98년	99년	
			상반기	8월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4.7	7.5	0.6	0.9
토지가격(전기비)	0.31	-13.6	1.19	-
주택매매가격(전기비)	2.0	-12.4	2.1	-

〈표 3〉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

(단위: 억달러, %)

	97년 12월	98년			99년	
		3월	9월	12월	5월	8월
W/US\$(기말)	1,415.2	1,378.8	1,373.6	1,207.8	1,186.3	1,184.9
유동성외환보유액	88.7	241.5	433.7	485.1	587.3	647.8
M3(평균)	15.9	14.5	13.1	12.4	13.3	-
회사채수익률(평균)	24.3	18.9	12.5	8.3	8.3	9.9
콜금리(1일, 평균)	21.3	22.5	8.5	6.7	4.8	4.7
종합주가지수(P, 평균)	390.3	523.0	312.2	524.7	745.4	933.1



엔화 국제화의 현황과 향후 전망

김우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엔화의 국제화란 국제거래에서 엔의 이용이나 보유를 늘려 엔을 국제적으로 널리 유통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무역거래나 자본거래에서 엔화 결제 비율을 높이고 외국 통화당국의 외환보유고에 있어서 엔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日정부도 엔화 국제화 추진에 적극적

일본이 엔의 국제적인 역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73년 3월 변동환율제의 이행으로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그후 85년 3월 일본 대장성내 외환심의회가 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국내금융·자본시장의 규제 완화,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비거주자가 엔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로엔시장을 육성하고 동경 역외시장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성장 둔화로 일본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달러결제가 통용되는 원유나 에너지 관련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은 점, 다수 아시아국의 통화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었던 점, 엔과 아시아통화 간의 외환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엔 對 아시아통화 환율이 불안정

하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유로화 출범 등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들은 그동안 엔 국제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일본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각에서 달러에의 지나친 의존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달러에 연동하여 자국의 환율안정을 도모하였던 다수 아시아 국가들 중에 실질적인 달러연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달러 독주시대가 할 수 있는 국제통화체제에 유로화가 등장하여 엔의 국제적인 위신이 실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엔 국제화가 새롭게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일본정부 역시 엔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일본은 98년 4월에 시행한 외환법 개정을 시작으로 12월에 금융시스템개혁의 주요 조치 시행 등 소위 '빅뱅'을 진행중이다. 98년 7월에는 대장성내에 '엔의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엔 국제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98년 10월에 발표한 신미야자와 플랜드 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본은 엔 국제화 추진 조치가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에서 엔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경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빅뱅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 국제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엔의 국제적 사용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투자자나 각국 중앙은행의 투자·운용 위험을 분산화한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엔 사용이 증대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수출 안정화를 유도하여 각국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엔화 사용 증대는 아시아의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

일본 기업들은 무역·자본 거래에서 외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저축을 해외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엔 자산이 확대될 경우 일본 금융기관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환율의 영향과 외화표시 자금조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막대한 개인저축이 환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해외에서 운용가능하여 부수적으로 對아시아 유입자금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엔표시로 생산설비자금 등을 조달하기가 쉬워지고 이들 국가 역시 엔 국제화에 따른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통화로서 엔의 역할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에 약 14%임을 고려할 때 엔 국제화의 현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무역에서 엔표시 결제비율을 보면 수출에서 90년대는 40% 안팎이었고 98년에는 36.0%였다. 이에 비해 달러표시 결제비율은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에서도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제품 수입 증가로 엔화표시 비율이 87년에 10% 선에서 95년에는

일본은 98년 4월 외환법 개정, 12월 금융시스템개혁의 주요 조치 시행 등 소위 '빅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신미야자와 플랜도 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엔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시스템의 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4.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98년에 21.8%로 하락하여 여전히 2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세계 무역에서 달러표시가 절반 이상으로 통용되는 데 비해 엔표시 비율은 5%로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인 6.8%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BIS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현재 외환시장에서 1일 거래되는 총규모의 통화별 비율에서 엔이 10.5%로 달러 43.5%, 마르크 15%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89년에 13.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외환시장에서 엔 거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채권의 발행 상황도 마찬가지다. 표시통화별로 볼 때, 달러의 비중이 97년 45.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엔은 94년에 13.3%를 기록한 후 97년에 4.5%로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오히려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96년 이후 국제채권 발행에서 엔표시 발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일본의 경기 침체와 저금리 추세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민간자본거래는 주로 간접금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아시아개도국의 일본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거래에서 일본과 아시아 지역 간의 결속력은 매우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기관의 對아시아 용자는 달러표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성에 따르면 일본 외

국환 공인은행의 대외대출금 잔고에서 90년대 엔표시 용자잔고는 전체의 20% 안팎 수준인데 비해 외화표시 잔고는 75~80% 수준이다.

준비통화로써 엔의 지위를 보면 80년대에 서서히 상승하였으나, 91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달러 외에 마르크를 준비통화로 보유하는 국가가 많다. 아시아 지역 중 다수가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달러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채권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엔의 국제화에는 일본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금융시스템의 재건이 전제되어야

일본 정부는 세계경제 전체에서 일본경제가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는 수준으로 엔의 역할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엔이 국제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도나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상당히 낮다. 그동안 엔 국제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데에는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엔 국제화는 단순히 기술적·절차상 조치만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경제의 건전성, 대외 개방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조건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통화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냐의 여부는 그 통화 사용국의

이해보다는 다른 국가가 그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엔화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엔 국제화에 있어서 엔 가치의 안정, 엔의 운용·조달 용이성, 엔의 교환 편리성 등의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환경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먼저, 달러·엔·유로가 주요 통화로 기능하고 있는 현재의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제통화제공 국가가 이들 통화간의 상대적인 환율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아시아에 있는 일본계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엔 사용시 애로점으로 엔보다 對달러 변동률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운용·조달수단의 부족, 엔표시 채권 및 채무의 환리스크 헤지수단의 부족 등 기타 이유에 비해서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대외결제 수단으로서의 통용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둘째, 엔을 용이하게 운용·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엔 사용에 따르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국내금융시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8년 12월 대장성은 엔 국제화의 추진을 위해 정부의 단기 채무로서 신용도·시장성·유동성이 높은 FB(정부 단기증권)를 일본은행 인수에서 시중 공모입찰발행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국채이자에

〈표〉 각국 중앙은행의 보유외화 통화별 구성비

(단위 : %)

	90년말	91년말	92년말	93년말	94년말	95년말	96년말	97년말
日 엔	7.9	8.4	7.6	7.7	7.9	6.5	5.7	4.9
美 달러	49.4	50	54.2	55.6	55.7	56.4	59.6	57.1
獨 마르크	17.0	15.6	13.6	14.0	14.4	13.8	13.1	12.8
英 파운드	2.8	3.2	3.0	2.9	3.3	3.2	3.4	3.4
ECU	10.1	10.6	10.1	8.6	8.1	7.1	6.2	5
기타	10.5	9.4	9.0	9.0	8.2	10.7	10.2	15.6

자료 : IMF, Annual Report 각년호.

관련한 원천징수를非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 면제하는 조치 등을 발표하여 엔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다만 국내금융시장 여건이 여전히 서구에 비해 뒤져있고 시장내에 개선해야 할 제도나 관행이 산재해 있어 조속한 환경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즉 세제 및 결제 제도의 개선, 국채발행 연한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채시장의 활성화, 동시결제나 즉시결제를 촉진하는 등 결제시스템의 정비, 회계 및 감사기준에 있어 국제적 기준과 조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셋째, 엔과 지역통화간 외환시장을 강화하여 엔이 보다 편리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엔과 지역통화 간의 외환거래는 엔 對 달러, 달러 對 지역통화 단계를 거치는 2단계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엔과 지역통화 간의 보다 편리한 외환거래를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엔 보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역내무역에서 엔을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동시에 아시아 각국이 자국통화의 안정을 위한 엔화자금 필요시 리포(repo) 방식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에 판매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엔표시 채권이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엔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스미야자와 플랜을 통해 아시아에 지원하는 자금을 대부분 엔으로 구성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결국 엔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시스템의 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제 회복에 따른 국내의 신인도 회복과 불량채권 처리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일본 민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

엔화의 국제화는 달러 의존성을 줄임으로써 아시아 지역내 환율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환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유로와 엔의 보유를 적절히 확대하여 엔의 국제화가 주는 장점을 잘 활용해야겠지만, 엔이 지역 기축통화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외투융자 활동을 다시 활성화시킬 것이다. 즉, 엔 국제화는 경제적으로 환경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엔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아시아에서 엔표시 거래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궤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엔화의 활발한 이용은 바로 국제통화로서 엔의 지위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로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응하여 아시아 역내에서도 장래 통화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긴밀성은 미 대륙이나 유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시아 경제권의 확대발전 과정에서 역내교역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에 역내통합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엔화의 국제화는 아시아 역내 국가의 달러 의존성을 줄임으로써 아시아 지역내 환율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엔 국제화는 단순히 엔의 활용 비중을 늘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엔이 달러나 유로에 비등한 지역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환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유로와 엔의 보유를 적절히 확대하여 엔의 국제화가 주는 장점을 잘 활용해야겠지만, 엔이 지역 기축통화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 대처할 필요가 있다. ■